

제1장 序 論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연구방법
- III. 연구의 기대효과

제1장 序 論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본법은 그 전신인 청소년육성법 이래 청소년관계법에서 일반법 혹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청소년관계법의 다양한 취지와 목적이 하나로 수렴·반영되고, 민간단체에 의하여 비효율적으로 수행되던 각 청소년보호·육성사업들이 정부의 배려와 후견적 지원 아래 놓이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설립을 창출함으로써 청소년연구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기본법과 그 전신인 청소년육성법의 공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¹⁾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확실한 원칙과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²⁾ 연구자는 평소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 분야에서 당사자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권리 주체들 사이에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며, 어떤 의무를 지는가, 그러한 권리·의무 관계에 다름이 생길 경우에 그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그 법 분야의 정책적인 법들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1) 함병수 외, 청소년관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p. 181 참조.

2) 함병수 외, 상계보고서, pp. 180-184 참조

지위와 효력을 갖는 법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기본법이 바로 이 점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기본법의 정비 필요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현행 청소년기본법 자체의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성과 청소년 관계 법제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은 그 자체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확보 미흡, 청소년보호법과의 연계성 미흡, 다른 청소년 관계법과의 법령 적용상의 혼란 등이 이런 문제들에 속한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그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원칙적인 법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 내용이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들로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보호법이 이 법과 별도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청소년관련 법령의 기본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에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 정비가 필요한 다른 사정으로써는 법 적용상의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제2조),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양자의 내용을 비교·검토·절충하여, 적용대상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 있다. 이 부분은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청소년기본법은 지금까지 청소년 관계 법제 환경의 변

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은 새로운 청소년 문제의 등장에 대응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며, 특히 정부의 청소년육성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의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은 이 분야에 대한 여러 편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제 연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기본법과 정책법의 상호간의 효력 관계가 어떠하며, 각 법령에 규정된 조문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검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해석론과 입법론이 아쉬운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거둔 성과를 모두 반영하면서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청소년기본법 개정방안에 관한 본고에서의 연구 성과로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하기로 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 및 효력 확보

둘째, 다른 청소년관계법과의 관계 재정립

셋째, 청소년 인권 항목의 구체적 법제화

넷째, 청소년관계 정책법의 체계 재정비

다섯째, 정부의 청소년육성계획과 정책 추진 과제의 법적 뒷받침

특히 연구자는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및 내용을 강화함에 있어서 청소년 권리 현장의 취지를 법제화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법해석학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주로 헌법상 청소년 관계 조항의 취지,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관계 법률과의 법적 효력상의 우열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적용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법 관계 법제 정비에 관한 선행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청소년기본법상의 법적 쟁점을 망라하여 도출한다.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도 재검토한다.³⁾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제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입법론적 대안 제시를 하기로 한다. 이 방법은 주로 청소년의 권리와 자유의 확인과 보장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적용한다. 이 방법을 통하여 연구자는 청소년 권리 현장의 법적 성격, 청소년관계 법령들에 규정된 조문 상호간의 비교 및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의 국제인권 법제를 비교하고, 입법론적으로 볼 때 현행의 청소년 관계 법제에 반영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III. 연구의 기대효과

단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자체를 기본법답게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최윤진 외, 청소년관계 법과 행정(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pp. 3-10 참조.

첫째, 이 정비방안을 통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야 할 법 원칙과 청소년의 인권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다.

둘째, 이 법이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이 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정함으로써 그 현실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청소년관계법들이 서로 적용 대상을 달리함으로써 겪었던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이 법의 정비 방안을 전제로 하여 다른 청소년관계법을 개편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입법론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이 법의 개정 시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청소년기본법 개정시 그 선행연구로써 이 시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시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같은 청소년정책을 놓고 그동안 관계법령들이 서로 상충되어 겪었던 많은 혼란이 불식되고, 정책입안과 시행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제고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법의 개정 시안에서 새로 확인된 청소년의 인권 항목들이 실제로 법제화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靑少年基本法の 沿革과 法源

1. 靑少年基本法の 沿革
2. 靑少年基本法の 法源

제2장 青少年基本法の 沿革과 法源

I. 청소년기본법의 연혁

1. 개관

선행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기본법은 널리 청소년관계법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의 변천 과정은 청소년관계법제의 변천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청소년관계법제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건국이후 1960년대까지는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지금의 청소년보호법)⁴⁾ 제정 이외에는 별도의 청소년 정책이 없었던 것, 1977년 8월의 청소년대책위원회의 설치, 1987년 11월 28일의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1991년 6월 27일의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과 같은 해 12월 17일의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1997년의 청소년보호법 제정이 청소년법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이라는 것이다.⁵⁾

한국청소년개발원(과거의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나온 일련

4) 미성년자 보호법은 1961년 12월 13일, 법률 제834호로써 제정되고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3조조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이 법이 폐지된 것은 청소년보호법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동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상의 미성년자 연령(만 20세 미만)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만 19세 이하)과 달라서 법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보호법은 폐지하였지만 그 법에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던 조문들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이관하였다.

5) 천정웅 외, 청소년관계 법령 및 제도 보완 연구(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p. 29.

의 연구물들은 일관되게 청소년 관계법제의 발전 단계를 네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⁶⁾ 본고에서는 이것을 청소년기본법 제정 전의 시기와 그 제정 후의 시기로 대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전의 시기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정기(1961년-1977년 7월)

청소년기본법 제정 전의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제1기는 1961년부터 시작되고 있다. 1961년이 기점이 되는 것은 청소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로서 미성년자보호법(지금의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것이 그 해이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은 1962년에, 스카우트활동등육성에관한법률은 1967년에 제정되었다.

미성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1964년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당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는 청소년선도 및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의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청소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고 이것의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연락, 협조, 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동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 및 169개 시·군·구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중앙위원회는 관련부처 차관 및 민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내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었다.

6) 이하의 내용에 관해서는 천정웅 외, 상계보고서, pp. 29-32 ; 최윤진 외, 상계서, pp. 14-16 참조.

요컨대, 청소년관계 법제는 이 제1기에서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법제화 방향을 모색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규제 위주의 보호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나.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법령 형성기(1977년 8월-1984년 12월)

청소년기본법 제정 전의 시기로써 청소년관계 법제사상 제2기로 평가할 수 있는 시기는 종전의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로 발전되면서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통제 기능이 강화된 1977년 8월부터 청소년종합대책추진방안을 마련하였던 1984년 12월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소년법이 보완되고, 1984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1981),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1984)이 제정되었다.

청소년대책위원회는 종전과 달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부장관 및 문교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의 간사 업무는 국무총리실과 문교부가 차례로 맡았다. 이 위원회는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의사결정 및 집행권을 갖는 행정청은 아니고, 여전히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위원회는 1984년 청소년종합대책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요컨대, 이 시기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처음으로 표명한 시기라 하겠다. 그러나 아

직까지도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청 혹은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없었다. 법제사적으로는 청소년의 수련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령들이 만들어진 것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 말엽부터 청소년정책을 보호와 규제 위주에서 육성 부분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3. 청소년기본법 제정 및 그 이후의 시기

가. 청소년육성법 제정기(1985년 1월-1990년 5월)

이 시기는 1985년 1월 국무총리실에 청소년정책담당부서가 설치된 때로부터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개칭된 1990년 12월 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육성법 제정(1987.11), 대한민국청소년 헌장 제정(1990.5) 등 청소년관계 법제사에 중요한 성과들이 가시화되었다.⁷⁾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으로 이 시기에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되고,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청소년 부분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또한 1988년 청소년정책 전담부서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신설되고, 시·도청소년과가 신설되었다. 그 후 체육부는 체육청소년부로, 청소년국은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을 근거로 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개 중앙부처장과 19인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육성 종합계획 등을 수립·추진하는 권한을 가졌다. 또

7)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교육의 개념상의 본질적인 차이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천정웅 외, 상계보고서, pp. 19-23 참조.

한 가지 특징은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체육청소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5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과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지방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시·도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시·군·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시기는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구체적인 청소년전담 집행기관을 두고, 범정부적으로 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정책의 방향에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라고 하겠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기(1990년 5월-1998년 12월)

이 시기는 1990년 5월에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을 제정·반포한 것에서 시작하여,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토대로 같은 해에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오늘에 이르는 시기이다.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그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육성 정책을 소홀히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오히려 그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청소년기본법은 그 육성법에서 미진하였던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의 필수 요소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8) 구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의 내용 비교에 대해서는 부록 6번 자료 참조

육성, 수련활동에서 사용될 수련거리의 개발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보완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인 수련터전의 확보를 위한 수련지구의 지정등 보다 적극적인 규정을 포함하여 1991년 12월 31일 공포함으로써 법률 제4477호로 성립되었다. 이들 내용에 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 방안에서 상론한다.⁹⁾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 관련 법규들과 관련하여 지니고 있던 법체제상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현행의 여러 청소년관계법규에 기본법의 입법 취지 및 내용과 상충·모순되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저해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제도를 조정·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4. 종합

청소년관계 법제의 연혁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로서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과 1962년의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아동복지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

1990년 청소년헌장이 제정 공포되었고, 1991년에는 이것을

9) 청소년기본법을 위주로 한 청소년제도의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천정웅 외, 상계 보고서, pp. 39-119참조.

10) 천정웅 외, 상계 보고서, p. 4. 폐지된 청소년육성법과 1990년 새로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상의 내용을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할 것.

바탕으로 청소년육성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뒤이어 1997년에 미성년자보호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의 한 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청소년기본법도 그 내용이 기본법의 성격에 충실한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상당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기본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소년 관계를 규정하는 다른 법률들이 여전히 이 기본법과 상충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다. 차제에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II. 청소년기본법의 법원(法源)

1. 청소년기본법의 법원의 설정 방법

청소년기본법의 법원에 포함되는 법률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관계법을 분류하는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있다.¹¹⁾ 이에 따르면 청소년 관계 업무 주관 부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청소년관계 행정 분야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¹²⁾ 청소년 관계 활

11) 함병수 외, 상계보고서, 1991, pp. 119-131 중 특히 124-126의 표와 127-131의 표를 참조할 것. 최윤진 외, 상계서, pp. 20-23도 참조.

12) 예컨대, 교육, 자격제한, 청소년단체육성, 시설, 근로, 복지, 보건, 소년비행, 교정, 갱생보호등의 범주로 나누는 것이 그러하다. 함병수

등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¹³⁾ 청소년관계의 직접성 여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¹⁴⁾

그러나 법학에서는 통상 어떤 법 영역의 범위를 정할 때 그 법이 규율하고 있는 권리·의무가 어느 정도 그 대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대상에 관한 광의의 법과 협의의 법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도 광의의 청소년기본법과 협의의 청소년기본법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정하기로 한다.

2. 광의의 청소년기본법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이라 함은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기본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고 하겠다.¹⁵⁾

외, 상계 보고서, p. 119.

- 13) 예컨대, 기본적인 것, 청소년, 지도자 및 단체, 시설·공간, 위생환경, 관련 세법 등으로 나누는 것이 그렇다. 함병수 외, 상계보고서, p. 119 참조.
- 14) 예컨대 함병수 등의 입장이 그렇다. 이에 관해서는 함병수 외 상계 보고서, pp. 119 이하 참조.
- 15) 이것은 사실상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함병수 외, 상계 연구보고서, p. 101. 함병수 등도 이 법을 정의함에 있어서 광의의 청소년기본법과 협의의 청소년기본법을 구분하고 있다. ‘關係法’과 ‘關聯法’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여 관계법이 관련법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의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광의, 협의라고 하는 구분을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양자를 그렇게 구분한 것은 결국 前者를 광의의 것으로 보고 後者를 협의의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관계법과 관련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여 양자를 구분코자 한 것은 그 말들 자체가 社會通念上 연구자들이 구분한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최윤진 외, 전제서, p. 13도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하는 말

이러한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에는 헌법상의 청소년 관계 조항과 교육기본법 및 그 부속법령들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¹⁶⁾

가. 헌법상의 청소년관계 조항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에는 우선 헌법상 청소년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 그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34조 제4항 :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2) 제35조 제2항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3) 제10조 이하 기본권 관련 조항들

나. 교육기본법

흔히들 청소년관계법과 학교교육법을 분리해서 접근하지만 교육관계법이야 말로 청소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들이라 할 만하다.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에는 이러한 교육관계법에서도 특히 교육기본법의 청소년 관련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로 통일하고 있다.

16) 같은 뜻을 표시한 분으로는 함병수 외, 상계보고서, pp. 102-105 참조.

다. 청소년기본법 부속법령

청소년기본법 부속법령이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별도의 법령으로 개별화·구체화한 것들을 말한다. 예컨대, 각종의 청소년단체, 지도자 판계법령인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협의의 청소년기본법

협의의 청소년기본법이란 바로 청소년기본법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청소년정책 및 연구,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의 지원책들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법제 정비의 대상으로서의 청소년기본법

본 연구에서 법제 개편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물론 협의의 기본법 즉, 청소년기본법 그 자체이다. 그러나 위의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관련 규정들과 교육기본법상의 관련 규정들도 청소년기본법 정비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제3장 靑少年基本法 整備의 前提로서의 靑少年의 人權

I. 서설

II. 아동권리공약과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에서의 청소년의 권리·의무

III. 청소년의 국내 인권규범들과 그 내용

제3장 靑少年基本法 整備의 前提로서의 靑少年의 人權

I. 서설

지금까지 청소년에 관한 법 문제를 논할 때 주종을 이룬 데 마는 청소년 그 자체의 권리·의무의 문제보다 청소년을 피보호자로 인식하여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하고, 관련 단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청소년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었다. 즉, 청소년법제에서 청소년의 권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그동안 청소년법제와는 별개의 법제로 인식되어 온 학교 교육법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청소년법제에서의 청소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인권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서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틀을 나름대로 구축하게 되었다.

학교교육법제에서 그동안 논의된 것들의 결론은 학생은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법상의 학습권과 이것에 근거한 실정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학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천권에 근거하여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권 행사를 대리하는 교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교사들은 이들 학부모들이 가지는 교육권의 자연법상의 위임을 논리적 근거로 실정법이 정한 직권으로서의 교육권을 행사하며, 학교설립·경영자는 이들 학생들을 수용하고 교사를 임용하여 그 설립 이념에 따라서 학교를 설립·경

영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교의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점이였다. 말하자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진 여러 가지 인권 중 그동안 교육법 연구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주로 學習權의 개념과 그 성격, 그것의 보장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교육관계법 개정 혹은 개편 방안 등이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찰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논의의 주제를 “청소년관계 법제 정비 방안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인권 보장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존의 학교 중심의 접근방법을 통하여 얻은 성과에 더하여 보다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다루고자 하는 학생의 권리 범위를 학교에서의 학습권 중심에서 보다 확대하여 ‘청소년이 속한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모든 人權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생소하게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확인과 이것들을 규정한 국내·외의 규범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인권 관련 규범들의 검토에는 각종의 선언과 법령을 포함하되 이것의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내 규범이라고 하는 제한된 분야에서 탈피하여 국제규범들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분야로 검토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론적으로는 본고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을 선언한 국내·외의 모든 규범들 특히, 법 분야 중 헌법과 민법, 노동법, 각종 사회보장법 및 국제인권법 등

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연구자는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주로 헌법과 청소년헌장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하되, 제한된 범위에서 국제청소년권리조약 혹은 기타의 법 영역상의 시각도 반영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이것들을 제외한 인권규범들은 이미 국내 법제에 모두 편입되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중복 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런 관점에서 우선 청소년의 인권을 선언한 국내의 어린이 및 청소년 헌장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II. 아동권리공약과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에서의 청소년의 권리·의무

1.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에서의 아동의 권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에서의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으로 오히려 앞서 있었다.¹⁷⁾

우리 나라에서 처음 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한 것은 국제연맹의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1924년)보다 한 해 앞선 1923년이였다. 그 해 5월 1일에 「천도교소년회」는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새싹들을 키우기 위하여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기념식장에서 「소년운동선언」을 통하여

17) 여기에서의 내용에 관해서는 주로 이용교 외, “청소년인권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보고 96-09, 1996, 5쪽 이하의 내용 참조.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을 선포하였다.¹⁸⁾ 그 내용은 어린이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고, 1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무상 또는 유상 노동을 폐지하며, 어린이에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¹⁹⁾ 이 공약 3장의 정신은 이후 「대한민국어린이헌장」과 「대한민국청소년헌장」으로 이어졌다.

2. 대한민국어린이헌장에서의 어린이의 권리

1975년 정부는 「아동의 권리공약 3장」 외에 「제네바선언」과 그리고 유엔의 「청소년의 권리 선언」(1959년)의 내용을 종합하여 전문과 9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어린이헌장」(이하 “어린이헌장”이라고 한다)을 공포하였다. 이 헌장은 그 후한 차례 개정되어 지금은 전문과 11개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다(부록1 참조).

그러나 어린이헌장은 그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할 뿐 권리의 주체라고 하는 인식에까지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시대의 변화된 시각과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의미를 크게 상실한 것이라 하겠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발달단계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구별할 실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어린이를 보호의 객체로서만 묶어두고

18)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 1885-1945,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p. 158.

19) 한국청소년개발원, 대한민국 청소년헌장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집, 1999.7.29에 포함된 “11. 청소년 인권의 역사와 구성,” p. 5 참조.

있는 이 헌장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다음에 소개하는 청소년헌장과 그 개정 내용은 중요한 참고가 될 만하다 할 것이다.

3.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에서의 청소년의 권리

정부는 1990년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이하 “청소년헌장”이라고 한다)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 제정·선포된 헌장은 처음부터 그것이 선언적 의미만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 현실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한 것이 1998년 10월 25일의 개편 청소년헌장이다. 이 헌장은 전문과 청소년의 권리 12개조, 청소년의 책임 9개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2 참조). 이것은 과거의 청소년 헌장이 선언적 의미만 가진 것을 보완하여 “실제적인 정책의 입안과 청소년 활동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²⁰⁾

신·구 청소년헌장의 내용 비교에 대해서는 후술하되, 여기에서 우선 간단한 특징만을 언급한다. 요컨대, 구청소년헌장에서는 청소년이 결코 권리능력을 가진 주체로 묘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그려져 있으며,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의 청소년 보호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신청소년헌장에서는 이점 명백히 달리 규정되어 있다. 어디까지

20)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헌장 해설,” 1998.10, 6쪽.

나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이며, 책임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구청소년헌장과 신청소년헌장이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문에서 청소년의 지위를 규정한 부분이다. 구청소년헌장에서는 청소년은 어디까지나 세시대의 주역 즉, 미래의 주역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그들에게 인정될 권리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청소년헌장에서 청소년은 단지 미래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현재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아울러 청소년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신청소년헌장에서 청소년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은 청소년 학제에서는 청소년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만한 대사건이라 할 것이며, 앞으로 청소년법제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준거라고 생각한다.²¹⁾

21) 신청소년헌장의 원문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Ⅲ. 靑소년의 國內 人權규범들과 그 내용

1. 개관

靑소년헌장이 비록 靑소년을 미래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규정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헌장은 역시 ‘헌장’으로 그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헌장을 뒷받침할만한 실정법상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헌법에서 靑소년의 권리 보장에 대한 원칙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받아 법률과 명령 차원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 나라 헌법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48년 제정이래 줄곧 靑소년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여 온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살려 각종의 법률이 靑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런 일이다.²²⁾

- 22) 구체적으로는 學業關係에서의 법률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就業關係에서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이, 福利關係에서의 법률로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의료법, 보건소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공중위생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善導·保護關係에서의 법률로 소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소년원법, 靑소년보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방송법, 靑소년시설관계상의 건축법, 자연공원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환경보전법, 도서관법, 독립기념관법 등이, 靑少年團體關係에서의 법률로 靑소년기본법, 한국靑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스카우트

여기에서는 이들 청소년인권 관계 여러 규범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보기로 한다. 헌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교육기본법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들에 대해서는 항을 나누어서 본다.

2. 헌법상의 청소년의 권리

가. 청소년의 기본권능력과 행위능력

원론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어른들에게 보장되는 모든 인권은 청소년들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이하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보장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청소년들에게도 이른바 기본권능력은 모두 인정되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들이 아직 미성숙한 관계로 이러한 권리들의 의미나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다는 이유, 그것을 알더라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이 어른들에 비하여 서투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그것을 행사하기보다는 그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이 대신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민법상 행위능력이론을 차용하여 헌법상 행위능력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활동육성에관한법률,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청소년지도자관계상의 청소년기본법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 民事關係에서의 법률로는 민법총칙상의 미성년자 규정, 친족법과 상속법상의 미성년자 규정 등이 있다.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관계법과 행정(보조자료), 1998.7, pp. 8-12 참조.

나. 靑少年의 헌법상 기본적인 인권

위의 靑少年의 기본권 능력이론에 따라서 현행 헌법의 靑少年 인권항목을 정리하면 <표 III-1>과 같다.²³⁾

<표 III- 1> 우리 헌법상 靑少年의 인권항목

헌법조문	조 문 의 내 용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신체의 자유(적법절차,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13조	신체의 자유(구속적부심사 청구권, 고문금지, 불리진술거부권, 연좌제금지, 무죄추정의 원칙)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 보호
제18조	통신의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3조	재산권의 자유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26조	청원권

23) 이석호, “학교 인권교육 교육과정 구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2, 35-36쪽 참조.

헌법조문	조 문 의 내 용
제27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해자의 권리
제28조	형사보상 청구권, 사법절차에 있어서 기본권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국가보상청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
제36조	혼인 및 가정생활과 보건에 관한 권리

이 표에서 보면 헌법 제36조상의 혼인에 대한 권리 등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당장 행사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보면 오히려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권리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제2항에서 “초등교육 및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그것이다. 또한 동법 제32조 제5항이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한 보호”를 천명하고, 제34조에서 국가의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확인한 것도 그 예이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권리도 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상의 권리 즉,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헌법에 명시한 권리 외에 헌법상 열거하지 않았으나 경시하지 말아야 할 권

리가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어떠한 권리가 이러한 권리에 해당되는가 하는 점은 학계에서나 법원 혹은 국회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문과 같은 헌법상의 다른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도출해낼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이러한 권리로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에 이른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권리는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청소년헌장이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선언의 헌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특히 청소년법제 중 청소년보호법을 새롭게 조명할 헌법적 시각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히 이 권리에 대해서 상론하고자 한다.

다. 특히 헌법상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그 제한

(1) 생소한 인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논의 동향

요즈음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말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성폭력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것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병원에서 환자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의사들이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은 채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치료받고, 또 재활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되고 있다. 199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관련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제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말이 제법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이라 하겠다. 연구자 역시 헌법을 배우던 법대 시절에는 이 권리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은 연구자만이 아니라 국내 헌법학계의 다수 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권리가 실린 헌법 교과서가 서너 권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부분 용어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정이 이러한 까닭은, 반드시 이 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모든 국민의 중요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부분 이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의 문제로 치부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것을 그렇게만 보지 아니하고 프라이버시와는 그 성격이나 내용에서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권형준 교수의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여기에 속한다.²⁴⁾

연구자는 이 논문을 참고하여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일반적인

법리를 검토하되, 연구자 나름대로의 논의를 추가하고자 한다.

헌법학에서 어떤 기본권에 관한 ‘법리’라 할 때에는 그것의 개념과 다른 권리와 구별 여하, 그 권리의 법적 성격,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와 내용 및 그 제한과 한계 등에 대한 학설과 판례 혹은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한 법적인 원리 혹은 논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도 같은 접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 권리의 개념부터 검토해본다.

(2)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일반적 법리

①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내용 : 우선 자기결정권의 개념부터 본다. 통상 자기결정권이라 할 때에는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중요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자기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사안’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미리 말하자면 이 부분은 학설 상호간과 판례 상호간에 대립이 많은 부분이다. 나라마다 학자마다 생각이 다르다.

독일의 다수설과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의미를 비교적 광의로 해석하여 이른바 ‘일반적 행동의 자유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일체의 생활 영역에 관한 개인의 행위의 자유라고 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의 소수설과 일본의 다수설, 미국의 통설 및 판례는 그 의미를 좁게 잡아 이른바 ‘인격적 이익설’을

24) 권형준, “헌법상 자기결정권,”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금량김철수정년기념논문집, 1998), pp. 334-354.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는 사적인 사안을 개인의 인격적 생존에 불가결한 이익의 문제로 한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광의설은 인권의 인플레이를 유발하고, 모든 자유를 헌법상의 권리로 간주하게 되는 등의 폐단을 낳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협의설은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말하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

다수의 입장은 광의설보다는 협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지금으로서는 이 권리에 대해서 아직 초보적인 검토 단계에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성급하게 취할 입장이 못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느 학설에 입각하든지 헌법학계가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내용으로서 내세우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생명과 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둘째, 혈육 잇기(reproduction)에 관한 자기결정권

셋째, 생활방식(life-style)에 대한 자기결정권

넷째, 그밖에 여기에 속할 만한 기타의 권리

그렇다면 이 권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을 가진 권리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헌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 : 현행 헌법에 이 권리의 근거가 될 만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것을 헌법상의 권리라

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것을 헌법상의 권리가 될 수 없는가? 학계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헌법 제37조 제1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어떤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인가 하는 점은 그것이 헌법에 열거되고 안 되고 하는 것만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헌법 제10조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실현에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실질적인 증거가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부합하는 권리인가?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에 서 전제가 되는 권리로 보아 그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권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헌법 제10조상의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에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재 그 권리에 관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까닭에, 이것의 근거를 헌법상의 어느 조문에서 구할 것인가 하는 점이 또한 문제가 된

다. 위에서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및 헌법 제17조상의 프라이버시권²⁵⁾의 종합적 해석을 통하여, 이 권리가 도출된다고 본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외국도 대부분 이 권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미국에서는 이 권리를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문제로 논의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이 권리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 권리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3조에서 그 근거를 구하고 있다.

한편 이 권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에 청소년권리조약 제12조도 포함된다. 이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③ 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 : 한편 이 권리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

25)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유형을 논하는 것이 된다. 헌법학에서는 통상 기본권의 그러한 성격을 국가로부터의 소극적인 자유권, 국가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생존권, 국가 경영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참정권 혹은 정치적 기본권, 국가에 대해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적극적인 청구권 등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볼 때에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그 성격상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권형준 교수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국가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권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기결정권은 공권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작위 청구권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국가로부터 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섭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것이 소극적인 자유권적 측면을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그쳐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자유권과 청구권의 구분이 상대화되어 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특히 그러하다.

④ 자기결정권의 권리 주체 :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법리에 서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그 권리주체론이라고 하겠다. 즉,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점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다면 이 기본권의 주체는 헌법 제10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모든 ‘국민’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으며, 그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즉, 이 권리가 청소년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권리주체에 관해서는 다른 기본

권에 비하여 특히 고려하게 되는 점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이 권리는 기본권능력만이 아니라 그 행위능력을 겸비한 완전한 사람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권리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 권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 정할 권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정할 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권리는 자신의 사적 사안에 대해서 타인이 간섭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올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하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이 권리의 주체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권능력은 있으나 그 행위능력이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주 없는 사회적 약자이거나 미성년자, 의사표시의 능력이 불완전한 그밖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래서 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성, 청소년, 병원의 환자 등이다. 사회에서는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기본권 행위능력이 완전하다고 자임하는 국가기관 혹은 이해관계인들이나 친·인척들이 그 결정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종종 그들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문제가 된 권리가 바로 이 권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주된 주체는 사회적 약자들이며, 이 권리는 약자의 약자를 위한 권리라고 할 만하다 하겠다.

⑤ 자기결정권의 제한 법리-이른바 가부장적 제한 원리(paternalism)에 대해서 :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법리는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다. 즉, “모든 국민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 원칙을 전제로 하되,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제한 법리에서 특별히 논할 것은 이른바 국가가 가부장적 입장에서 본인 보호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가부장적 제한 원리(paternalism)라고 하겠다.

이 원리에 관해서 권형준 교수는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종래 일본에서도 본인 보호를 위한 가부장적 제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논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한정적이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폭자는 이것을 어떤 사람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장기적으로 볼 때에 오히려 자신의 인격적 자율 자체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영속적으로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가부장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는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이라도 그 자신의 자기결정에 대해서 헌법상 국가가 가부장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이 일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도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권교수는 성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하물며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의 가부장적 제한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의 자기결정권의 미숙한 행사로 인하여 그들의 건전한 판단능력의 형성을 저해하거나 생명 혹은 신체를 상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아니 된다고 말한다.

연구자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자

기결정권의 가부장적 제한은 자칫 본인 보호라는 미명하에 한계를 일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권교수는 그 제한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한정적인 범위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연구자도 이에 동의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 문제는 본인의 판단능력의 차이와 보호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로써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검토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 접근의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3)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제한의 문제

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의 보장 필요성과 민법적 법리의 차용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의 필요성은 우선 그들도 미래의 한국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정된다. 그들도 역시 헌법 제10조상의 '국민'에 해당되며,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이 가진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연구자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제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민법상의 미성년자 규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한정치산자이다. 여기에서 권리능력은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위능력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 능력을 말한다. 미성년자에게는 이러한 행위능력이 한정된다. 이것은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조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소유권을 예로 들면 미성년자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행위능력이 한정되므로, 민법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이전할 때에는 관련 서류에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동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의 없이 한 소유권 처분 행위는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항상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5조 제2문에 의하여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처분을 허락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이 미성년자의 限定治産의 법리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민법의 미성년자의 권리 및 행위능력에 대한 법리에서 미성년자 자신의 의사표시 능력보다는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즉, 동의권과 취소권에 주로 주목하여 왔다. 즉, 미성년자는 의사표시능력과 행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이들의 능력을 보충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민법상의 법리를 뒤집어보자.

이것을 뒤집어보면 일단 미성년자의 권리 행사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보호자가 아니라 미성년자 자신이며, 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의사표시와 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

는 권리만을 가진다고 하는 점이 보인다. 즉, 민법은 미성년자의 능동적인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우리는 흔히 민법상 미성년자 법리를 미성년자의 권리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이해함으로써, 이것이 헌법상의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 법리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법리를 뒤집어보면 이 법리는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의 법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제한의 필요성과 제한의 범위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그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 제한도 중요하다. 그것은 위에서 미성년자의 법리에서도 보았지만 청소년 자신이 아직은 미성년자로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의 자기결정권 법리 중 이른바 가부장적 제한 원리(paternalism)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사회와 학교가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것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의 자기결정권의 미숙한 행사로 인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YMCA가 지난해 전국의 남녀중고생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74.4% 정도가 가출충동을 느끼고, 14.3%는 실제 가출을 해봤으며 이들이 가출 후 찾는

곳은 주로 오락장 향락·유흥업소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학생의 절반 이상(57.1%)이 쉼터가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²⁶⁾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부랑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③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제한 법리의 구체적 적용

i) 학교규칙 제정과 적용에서의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 문제

요즘 학교에서 학칙에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학칙의 대부분 내용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통제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문제의 본질은 학칙의 내용 자체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서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철차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본다.

학칙은 결국 일종의 학교의 자치규범의 하나로써, 범규범의 일부이며, 따라서 법의 이념인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된다. 그 정의에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있다. 실체적 정의의 문제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학칙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들에게 학칙 제정에 참여할 기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줌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에서의 두발이나 복장 등에 대해서는 학교가 이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규율

26) “10대 방황 더 없게” / 「청소년쉼터」 문연다. 국민일보 1992. 10. 23, p. 12.

하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하겠다. 연구자는 그렇게 하여도 아마도 학생들이 어른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만한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의 미성년자 법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각종의 다양한 학교규범은 민법의 종래 법 해석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주도적인 의사표시보다는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시각에서, 아예 처음부터 학교장과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규범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학교규범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민법상의 미성년자 법리 중 미성년자의 한정치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일단 주도적인 의사표시권을 학생에게 부여하고, 학부모와 교장과 교사들이 이에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정도로 개입을 자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ii)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의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 제한 문제

국가가 가부장적 원칙에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 예로써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등의 행

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혹자는 이것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범위가 청소년이 어디까지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등의 원조를 목적으로 성적인 접촉등의 교제를 제공한 경우라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이것을 제한하고, 원조교제를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청소년의 이 권리도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 것인 만큼,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하는 명분 하에 그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법의 타당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제한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게 규정한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조문별로 문제점을 짚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방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iii)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의 자녀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제한 문제

1998년 경남 마산시에서 일어난 아버지에 의한 초등학교 자식 손가락 절단 사건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모의 침해와 그 배제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당시 사건에서의 아버지는 처와 이혼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생계가 어렵게 되자 아들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그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작극을 털어놓은 뒤 “아빠를 미워하지 않는다. 아빠가 감옥에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 아들은 급식비를 내지 못해 끼니를 굶다시피 하다 아버지의 범행에 순순히 따랐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그 아들의 자기결정권 행사라 하여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다. 부모는 자식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사실상 빼앗아 버렸다. 부모라고 하여서 그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 진 법률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97.12.31 법률 제 5487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폭력 가정으로부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오히려 유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종래 가정폭력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는 ‘내 집사람, 내 애를 내가 다스리는데, 당신이 웬 참견이냐’는 식이었다. 그에 대해 피해자, 이웃, 사회는 응대할 말이 마땅치 않았다. 심지어 폭력신고를 받은 경찰에 대해서도 폭력범이 오히려 당당해하고, 경찰도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도 있다. 다시 말해 관례적 불개입(conventional non-intervention)의 입장이 지배해 왔다고 한다.²⁷⁾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아동을 학대부모로부터 분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위의

27)韓寅燮, “家庭暴力法の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서울대 학교 法學, 39권2호(98.08) 참조.

法은 이러한 불개입의 관행을 깨뜨리고 가정폭력에 대해 국가개입(state intervention)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法 제5조에서 보듯이,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法은 가정폭력에 대한 공동체의 개입(community intervention)이 때로는 강제될 수도 있음을 선언한다. 이 法 제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한인섭 교수는 그동안 가정문제를 '사적 문제'로 치부해 버림으로써 일반인의 가정폭력 신고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처럼 법문화가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항은 가정폭력 자체가 사적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방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 문제'임을 확인시켜주었다고 평가한다.

연구자는 이 법이 아동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모로부터 그 아동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 개입함으로써, 아동의 자기결정권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통상 이 권리에는 생명과 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포함되는데, 가족에 의한 아동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는 바로 그 아동의 '생명과 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기본법 제5조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개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중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청소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 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어서 제5조는 가정의 책임을, 제7조는 사회의 책임을,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이 법이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청소년기본법상의 당사자들의 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제대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제1항의 청소년의 권리로서 규정된 것은 좋게 보더라도 독일식으로 말하자면 자기발현의 권리를 규정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아울러 제2항 역시 청소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여야 할 도리로서 “자신의 능력 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상식적인 선에서 규정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청소년의 책임 역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에서 책임이라고 함은 의무 불이행의 결과로서 그 불이행자에게 주어지는 주로 민·형사상 혹은 행정상의 불이익

을 말하는 것인데, 권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책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책임’이 아니라 ‘의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²⁸⁾

4. 敎育관계법상의 靑少年의 權利

가. 靑少年學계에서의 敎育관계법에 대한 관심 여하

연구자는 청소년의 권리·의무중 상당 부분이 敎育관계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종래 청소년學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본다. 학계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은 학교敎育과 관련된 것인 만큼 청소년법제상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가 반문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법제를 연구하면서 敎育관계법상의 학생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를 도외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이유는 바로 이 敎育관계법에서 청소년의 인권 중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권의 보장에 관한 내용은 물론 학교 敎育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할 학생들의 일반 인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敎育법학계의 법해석학적 연구성과를 간략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28) 현행 청소년기본법 전문에 대해서는 부록 4번 참조.

나.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학습권과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습권 보장의 의미

(1)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습권 보장 내용

우선 학습권과 관련해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제3조에서 학습권을, 제4조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6조에서 교육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제8조에서 의무교육으로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제9조에서 학교교육의 목표로서의 전인적 교육을, 제10조에서 사회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조는 學習權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의 학습권과 교육기본법상의 학습권과의 관계

위 조문상의 학습권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조문이 규정한 학습권이, 이 조문에 규정되기 전에 이미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헌법 제10조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당연한 내포로서 인정되고,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논리적 전제가 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자는 학습권은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이것이 법률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인 것이 아니라 이미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것을 교육기본법에 규정하였다 하여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그동안 학계에서 주장된 학습권은 어디까지나 학설과 판례로서만 인정되어 오던 것인데, 이제 이것을 교육기본법이라고 하는 실정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차원에서 학습권을 거듭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3) 기본적인 권으로서의 학습권과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계

이 학습권과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헌법상 와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 항목에 포함되었던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자는 양자의 관계에서 대해서 선행연구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학습권이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는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 학습권에 세 가지 다른 성격의 권리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시민권으로서의 학습권과 생존권으로서의 학습권,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학습권이 그것들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이들 권리 중에 바로 생존권으로서의 학습권이 헌법에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상의 학습권 역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괄하는 포괄적 학습권의 의미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다. 교육관계법에서의 학생의 인격권 및 일반 인권 보장

교육기본법 제12조는 및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인권을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이다. 이 조문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일반적인 기본적 인권이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여기에서의 일반적 인권이란 이미 앞에서 본대로 헌법상 및 청소년의 인권항목에서 확인한 인권들을 망라한 것들이다. 따라서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이 조문 제2항은 그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학습자의 인격권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이것이 특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라. 학습자의 학습권과 일반인권의 제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은 이러한 학습자의 일반인권과 인격권도 그것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에서 인정되며, 특히 교원들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조문은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 제한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에는 학습자의 학습권도 포함된다.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교육기본법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교육(제18조)과 영재교육(제19조), 유아교육(제20조), 직업교육(제21조), 국제교육(제29조)의 의무를 지우고,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제27조), 장학제도(제28조) 등의 배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요컨대, 교육기본법은 학습자의 기본권으로서 특히 학습권 보장을 강조하되,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권 특히 인격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며, 학습자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설립자(제16조)와 학교당국(제9조) 및 교원(제14조)과 보호자(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7조)에게 각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겠다.

IV. 청소년의 국제인권규범들과 그 내용

1. 청소년권리조약 이전의 국제규범들

청소년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를 통하여 확인받게 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됨으로써이다.²⁹⁾ 이 선언은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다. 선언의 대상을 일반 남녀로 하고, 와 청소년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을 인류의 의무라고 인정하는 이 정신은 이후 1959년 ‘국제청소년권리선언’으로 계승되었다.

1959년의 「국제청소년권리선언」은 청소년의 권리 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국제문서이다.³⁰⁾ 이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나라들은 세계인권선언과 별도로 ‘의 권리’만을 따로 떼어서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의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불충분하다는 것,³¹⁾ 이들은 권리의 주체이면서도 직접 그것을 행

29)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용교, 상계보고서, p. 2 이하 참조.

30) 본고에서는 기존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인권 규범들의 번역시 대개 ‘아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 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국내의 언어사용 환경상 부적절한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이라고 하는 말로 고쳐 부르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후술한다.

31) 이것의 법적 표현이 청소년권리조약 제3조상의 및 청소년의 이익의 최우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

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별도의 권리선언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서 이 선언이 성문화되었다.

이 선언은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선언은 와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선언'에 그침으로써 그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었다.

2. 국제청소년권리조약에서의 청소년의 권리

가. 조약의 제정과정

국제인권규약이 발효된 1976년 유엔 총회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선언」 20주년인 1979년을 「국제아동의 해」로 결정하였다. 이 국제아동의 해는 와 청소년의 인권 실현을 촉진할 목적으로 결정되었고, 「국제청소년권리조약」 채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³²⁾ 이 조약은 1978년 폴란드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 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정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32) 이 조약은 흔히들 국제아동권리협약이라고 부른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태수, 아동의 권리 협약-청소년의 권리(예지각,

「권리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1990년 9월 2일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나. 조약의 구체적 내용

국제청소년권리조약은 전문과 제1, 2, 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유엔헌장, 세계인권 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청소년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제1부(제1조 내지 제41조)는 청소년의 권리와 체약국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 내지 45조)는 협약의 국제적 실시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청소년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 내지 제 54조)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³³⁾ 이하에서 조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1991), pp. 54-65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 협약에서의 ‘아동’을 ‘청소년’으로, ‘협약’을 ‘조약’으로 고쳐 부르기로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것의 적용대상 및 내용과 성격을 정확히 반영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3) 한국청소년개발원, 대한민국청소년헌장 개정을 위한 참고 자료집 (1998.7.29),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 참조.

(1) 청소년의 개념과 법적 성격

이 조약에서 ‘청소년’(child)이라 함은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제1조). 김태천에 의하면 미국에서 child는 때때로 young persons 혹은 juvenile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나 동일개념으로 해석된다.³⁴⁾ 김태천 교수는 정치적 조직체로서 사회가 개인의 지적 성숙도를 인정하는 시기에 대한 기준으로서 선거연령을 들 수 있다고 한다. 국제의원연맹(IPU)는 1993년경 지구상의 186개 주권국가 중에서 150개국 의 선거제도를 조사하여, 선거연령에 관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향은 18세임을 확인하였다.

우리 나라의 국내법상으로도 청소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 모자복지법 제4조 제3항). 그러나 민법상으로는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민법 제4조). 소년법도 마찬가지이다(소년법 제2조). 그러나 이미 본 것처럼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은 그 육성을 위한 수련의 목적상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우리 나라가 위 조약에 가입할 당시 청소년의 연령에 관한 위 조약 제1조에 대한 유보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미성년자보호법과 소년법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 소년 혹은 청소년으로 인정되는 18세 이상인 자는 위 국내법상으로는 권리주체 혹은 보호대상으로 될지언정, 위 청소년권리조약의 청소년으로서 권리주체와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가령 18세 이

34)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11.htm>, 참조.

상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 권리조약상의 국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약 위반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청소년권리조약이 종래의 보호에 관한 국제문서에 비하여 지니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종전의 여러 국제조약이 청소년을 주로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었음에 반하여(보호객체론), 위 조약에서는 더 나아가 청소년을 하나의 능동적 권리의 소유자 내지 행사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권리주체론). 위 조약에 의하면, 청소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특별보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취약성을 가진 인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견해를 표명하며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정보를 제공받고 성인들과 함께 결정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2) 청소년의 인권 항목

국제청소년권리조약에서 청소년의 권리의 구체적인 조문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약은 제1조 청소년권리조약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 제2조 청소년에 대한 차별의 금지 원칙, 제3조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 제4조 당사국의 청소년권리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무, 제5조 청소년에 대한 부모 등 법적 책임자들이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행할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지고 있음을 국가가 존중할 의무를 규정할 외에 제6조로부터 제40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35개조에 걸쳐서와 청소년의 인권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즉, 제6조 생명권 및 생존·발달권, 제7조 국적취득권, 제8조

사회적 신분보존권, 제10조 부모에 의한 양육권, 제10조 가족제 결합권, 제11조 청소년의 불법해외이송방지 의무, 제12조 의견표시권(적법절차권), 제13조 언론·출판의 자유권, 제14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 제15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권, 제16조 사생활보호권, 제17조 정보접근권, 제18조 부모 쌍방의 양육책임, 제19조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및 보호권, 제20조 불가피한 경우의 국가의 가족으로부터의 격리 보호 책임, 제21조 입양에서의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보호권, 제22조 난민으로서의 보호권, 제23조 장애의 특별한 보호권, 제24조 건강권, 제25조 건강 정기심사권, 제26조 사회보장권, 제27조 일정 수준의 생활여건 확보권, 제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29조 교육목표설정에서의 청소년의 인격존중등의 권리, 제30조 소수자 및 원주민의 권리, 제31조 유식 및 여가, 문화 및 예술활동권, 제32조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권, 제33조 마약 등으로부터의 보호권, 제34조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권, 제35조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권, 제36조 모든 유해한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권, 제37조 형사상 신체의 자유권, 제38조 무력분쟁에서의 국제인도법상의 보호권, 제39조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 복귀권, 제40조 형사소추상의 특별보호권 등이 그것들이다.

이상의 청소년 인권 항목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권리조약에서의 청소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우리 나라와의 관련성

우리 나라는 이 조약에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1991년 11

월 20일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91년 12월 20일 정식의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우리 나라는 비준과정에서 조약에 나타나 있는 내용 중에서 현행의 관련 법률과 저촉되고 있는 일부 조항들에 대하여 유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³⁵⁾ 우리 나라가 유보하고 있는 조약의 조항은 제9조 3항, 제21조 가항, 그리고 제40조 2항 나호

- 35) 유엔 권리위원회 제11차 회기 유엔권리위원회는 이 조약이 한국의 국내법 체계 내에서 곧바로 적용가능하며 법정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조약에 비준함으로써 이 조약이 국내법상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형준, 앞의 책, 118-124쪽 참조. 그 요지는 학계의 통설에 따라서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 다만 청소년 권리조약 가운데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아닌 사회적·문화적 권리의 경우에는 조약 제4조가 “...당사국은 자국내의 이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구조를 통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실시 의무는 점진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 조약상의 권리를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것, 신체의 자유에 관한 것, 절차적 권리로서의 의견 표명에 관한 것, 기타의 것으로 분류하고, 이것들의 취지에 위반하는 학교에서의 각종의 학칙이나 구체적 처분들은 모두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민법 제909조 등이 양친의 협의 이혼시 친권자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오직 부모의 의사에 맡기고 있는 것은 이 조약 제1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재검토를 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 조약이 국내법상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하는 한, 이 조약이 민법에 대해서 후법의 지위를 가지는 한 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민법의 관련 조항이 그 즉시 무효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지 아니하고 “재검토를 요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조약이 국내 법률보다는 상위의 규범에 해당하다고 하는 법리적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자는 국제인권 규약과 마찬가지로 이 조약의 경우에는 헌법보다는 하위이지만 국내 법률보다는 상위의 규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조약의 국내적 발효 즉시, 이것에 위배되는 국내 법률은 무효로 된다고 해석한바 있다. 연구자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효력 여하에 관한 상세한 견해에 관해서는 허종렬, “國際人權規約의 國內法的 效力과 憲法”,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成均館法學」, 제5호(1994), 35-64쪽 참조.

(5) 등이다. 정부가 밝힌 유보의 내용과 사유는 다음과 같다.

협약의 제9조 3항은 부모와의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민법 제837조의 2는 부모의 면접 교섭권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어린이의 면접 교섭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입양에 관한 협약에서는 관계 당국의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으나(제21조 가항), 대한민국의 민법 제871조는 부모가 입양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민법 제878조와 제881조에서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협약의 제 40조 2항 나호 (5)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소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 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 534조에 의하여 비상 계엄하의 군사 재판에서 단심제가 인정되고 있다.

1990년 9월 30일 유엔은 유니세프(UNICEF) 주관 하에 「청소년을 위한 세계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71명의 국가 원수를 포함한 총15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990년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 정상 선언과 행동계획」³⁶⁾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회원국들이 각기 자국의 청소년을 위한 「1990년대 행동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f Action)을 작성·시행하되, UNICEF를 비롯한 관련 유엔기구들이 이를 국제적·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요청하였다.

36) 정확한 표기로는 “The World Summit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for Surviv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Children for the 1990s”이다.

우리 나라 정부는 이에 외무부장관을 참석시키는 한편, 1991년 6월 그 선언 및 행동계획에 서명하였고, 이 행동계획의 요청에 따라서 1992년 2월 「한국복지 10개년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 나라 청소년을 위한 「1990년대 행동프로그램」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시행한 바 있다.³⁷⁾ 또한 정부는 1994년 11월 30일 권리위원회에 “유엔권리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정부 최초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³⁸⁾

37) 權亨俊, “어린이의 기본권에 관한 고찰-특히 UN 어린이 권리조약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1998.10), p. 99 참조. 그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는 숭실대학교 노혜련 교수의 연구가 있다(노혜련, “청소년권리조약 및 세계 정상행동 계획의 국내 이행 상황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권리연대회의, 아동의 권리, 세계의 약속(내일을 여는 책, 1997), pp. 100-125 참조). 주한유니세프대표부의 프로젝트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이 연구에서 노 교수는 주로 입양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대보호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보호를 위한 서비스(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위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였다.

38) CRC/C/Add.21 30 November 1994 참조. 그 내용의 소개에 관해서는 역시 청소년권리연대회의, 앞의 책, pp. 137-197 참조.

제4장 靑少年基本法 改編 方案

I. 現行 靑少年基本法の 정비방향

II. 靑少年基本法の 구체적 개정방안

제4장 靑少年基本法 改編 方案

청소년기본법은 입법 취지대로 청소년을 법적인 주체로 파악하여 그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고 하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청소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하기에는 이 법이 내용상 혹은 성격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청소년정책 추진 의지를 담아야 할 필요성도 많다. 여기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이 명실공히 기본법으로서의 성격과 지위, 효력을 갖도록 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정비 방향

1. 청소년기본법 자체의 문제점 시정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연구 보고서상의 연구성과가 나와 있다. 과거 청소년육성법 때에는 함병수 등이 청소년육성법의 한계, 청소년 주요 관계법령의 입법내용상의 흠결, 청소년기본법 상호간의 연령과 호칭 사용상의 상이성 등 세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³⁹⁾ 본 연구에서는 이 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자 한다.

39) 함병수 외, 상계보고서, p. 180 참조.

가. 청소년기본법의 조문의 과다와 축소

청소년기본법은 총 10장 7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법으로서는 방대한 편이다. 교육기본법은 총 3장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면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및 청소년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조문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청소년기본법의 조문 내용의 편중과 해소

현행 청소년기본법 자체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상의 총칙은 목적, 기본 이념, 정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청소년교류의 진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관계 당사자들인 청소년과 그 보호자, 지도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확보하는데 본질적인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과 내용상 청소년관계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부분이 구체적으로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총괄(8개 조항) 및 청소년복지(4개 조항) 등에 관한 조항 등은 전체의 15.8%에 그친다. 청소년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시행에 대한 규정 역시 청소년기본법의 본질적인 내

용을 이루어야 할 부분으로 필요하면 보완되어야 한다. 다만 법 조문 전체에서 이 부분의 비중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조문들이 규정하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후술 하듯이 단지 수련활동에 관한 조문들에 비하여 비중이 적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조문들은 현 상태로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제3장 수련활동 지원(10개 조항),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10개 조항), 제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6개 조항)의 형태로 수련활동 관련 법령이 전체의 34.2%를 차지한다. 청소년기본법은 기본법이라고 하기보다 수련 활동 지원법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수련활동과 시설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정비방안에서는 이 법이 기본법적 성격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 입법의 성격이 강한 이 조문들은 원칙적인 것들만 남긴 채 이 법에서 모두 삭제하기로 한다.

넷째,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보호 관계 규정이라고 할만 것이 2개 정도 있다.⁴⁰⁾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관계 육성 및 보호 양자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들을 고루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 청소년기본법의 입법체계 개선

청소년관계법은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면서도 각기 다른 입법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 법률 상호간에 상호충복과 누락 내지는 상호모순을 많이 겪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은 그것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40) 제48조 (청소년유해요인 정비등), 제49조 (청소년의 비행예방등)의 조문이 그것들이다.

불구하고 제대로 그 지위와 효력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청소년 관련 법령들이 이것이 기본법임을 무시하고 그것과 상충되는 조항들을 규정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법을 집행하는 당국자로서는 청소년정책을 통일적으로 효율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

(1) 청소년기본법의 효력에 관한 해석론

1) 구청소년육성법 제3조의 해석론

구청소년육성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론상의 대립이 있었다.⁴¹⁾

① 청소년육성법을 다른 청소년관계법의 상위법으로 본 견해 : 이 견해는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의의가 청소년의 지도 육성을 위한 종합적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는 법 제정의 취지 및 동법 제4조상의 우선 적용 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⁴²⁾

② 청소년육성법과 다른 청소년관계 법률이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

이 견해는 우리 법체계상 모든 법률은 그것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한 모두 헌법 아래에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⁴³⁾

41) 이상과 같은 견해 대립에 관한 내용 소개에 대해서는 함병수 외, 상계보고서, p. 132.

42) 김일수, “제청소년관계법의 상위법으로서의 청소년육성법,” 청협, 1987 봄호, p. 19 참조.

43) 함병수 외, 상계보고서, p. 132 참조.

이 견해는 다만 동일한 형식의 법령이라면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점을 들어 기존의 청소년관계법보다 신법인 청소년육성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한다. 즉,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청소년관계법이 이 육성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할 입법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점에서 입법자가 이 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⁴⁴⁾

요컨대, 이 견해는 법적 효력에 있어서 청소년육성법이 다른 청소년관계법의 상위법으로서 청소년육성법에 배치되는 규정에 대하여 직접적인 개폐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③ 연구자의 견해 : 연구자는 양 견해가 모두 해석상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본다. 전자의 견해는 청소년육성법의 취지만을 중시하여 정작 결정적인 근거로 삼아야 할 제3조상의 규정 내용에 대한 엄밀한 해석을 결하고 있으며, 후자의 견해는 형식적인 법단계설에 치우쳐 법의 실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상위법인가의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 법률이 그 자체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것이 비록 다른 법률과 동일한 입법형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청소년육성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과의 관계에 적용해서 보면, 구청소년육성법이 다른 청소년관계법에 비하여 우선 적용되는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청소년육성법 그 자체에 그것을 정당화할만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44) 함병수 외, 상계 보고서, pp. 132-133.

달려 있다. 그런데 동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법 해석의 일반론에 의하면 이 경우 이 조항의 규정은 이 법이 청소년관계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라고 하는 점을 밝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모든 사항에 있어서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분명히 이 법 제3조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아니라 그 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법관계에서 이 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되지만, 다른 법률상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이 이 법에 대하여 특별법이 되어 우선 적용된다고 하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적어도 청소년육성법은 다른 청소년관계법에 비하여 상위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청소년육성법은 이 법과 저촉되는 다른 청소년관계법을 형식적으로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소년기본법 제4조의 해석론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 법률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합병수 등이 청소년육성법의 효력에 이어서 계속 검토한 것이 있다. 그 요지는 청소년기본법 제4조상의 효력 조항을 청소년육성법 제3조상의 효력 조항과 같은 것으로 보아

후자에 대해서 내렸던 해석론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소년기본법 제4조상의 효력에 대한 위의 선행 연구는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중에는 청소년기본법을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따라서 이 법과 상충하는 다른 법의 내용을 개폐하는 상위법이라고 보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본법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다만 그것이 특별법이나, 일반법이나 하는 논의만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과 상당히 달랐던 청소년육성법을 이미 다른 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으로 본 견해가 없는 것이 아님을 위에서 확인한 바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제4조상의 우선 적용 조항에 대한 해석론으로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청소년기본법이 특별법이라고 보는 특별법론과 그것을 부정하는 일반법론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별법론은 청소년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상위법은 아니지만 내용의 성격상 상위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일반법론은 청소년기본법은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명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률에 불과하며, 상위법을 의미하는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법론은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법이 상충하는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라고 하는 해석한다고 한다.⁴⁵⁾

그러나 이 연구는 상위법과 하위법,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과 의미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 논의 가운데 일반법과 하위법을

45) 함병수, “청소년관계법 서설,” 최윤진 외, 전거서, pp. 25-26 참조.

같은 것으로 보는 예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양자는 서로 무관한 개념이다.

셋째, 이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제4조와 청소년육성법 제3조상의 규정의 차이를 간과하고 과거 청소년육성법의 법적 효력을 해석하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과 그 법적인 효력 면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의 靑少年基本法 제4조는 과거의 청소년육성법 제3조와 판이하게 다르다. 양 조문을 대비하면 다음 <표 IV-1> 과 같다.

<표 IV-1> 구청소년육성법과 신청소년기본법에서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비교

법률명	청소년육성법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 용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첫째, 구 청소년육성법은 조문의 제목을 “적용범위”라고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함으로써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비하여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지언정, 상위법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은 조문의 제목을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그 규정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육성법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청소년육성법과 같은 예외를 인

정하지 않고 이 법이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상위법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둘째, 법의 명칭에 있어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과 달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성격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위의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이 적어도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는 상위법이라고 하는 점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 어긋나는 다른 청소년관계법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으며,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 실질적인 개폐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 점은 분명히 구청소년육성법과 달라진 점이다.

문제는 청소년기본법의 취지가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 현행 다른 청소년 관계 법제와의 관계가 현실에서 그렇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⁴⁶⁾

3) 청소년기본법의 사항적 한계 문제와 향후의 입법론 및 해석론

위에서 청소년기본법은 같은 법 제4조를 통하여 이 법이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대하여 상위법에 해당된다고 하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은 바로 이 점에서 사항적 한계를 분명

46) 이런 문제에 대한 극복 방안을 소개한 것으로는 천정웅 외, 상계보고서, pp. 242-254 참조.

히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한 범위가 단지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법 제4조를 문리적으로 반대 해석할 경우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이 법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우선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을 완전한 의미의 청소년에 관한 모든 사항에 걸친 기본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말하자면 한정된 범위에서만 기본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것이 육성에 관해서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자 한다면 그 법의 명칭을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청소년육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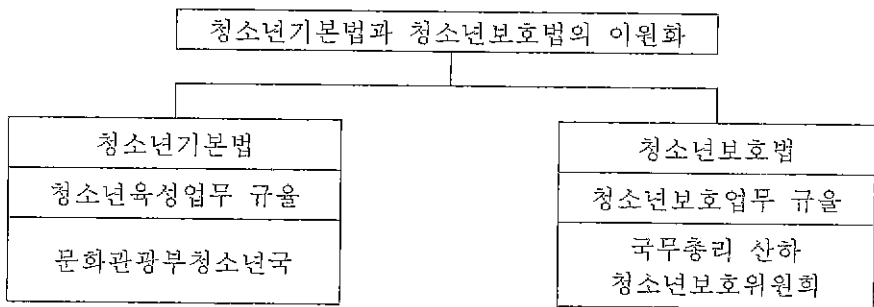
그러나 청소년법제의 연혁과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을 다시 육성법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면 차제에 오히려 이 법이 확실한 기본법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청소년의 '육성' 뿐만이 아니라 '보호'에 관해서도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해석론에서 있어서도 가급적 이 법이 청소년의 모든 사항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새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과의 이원적 운용

1) 청소년 육성과 보호 업무의 이원적 운용과 청소년 관계 법령의 이원화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정책업무가 청소년육성업무와 청소년보호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전자는 청소년기본법이 규율하고, 후자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율한다. 또한 전자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이 주관행정기관이며, 후자는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관 행정기관이다.

이것을 표시하면 <그림 IV- 1> 과 같이 이원화되었다.



<그림 IV- 1>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이원화

2)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상 상충

위에서 본대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조의 우선적 효력의 사항적 한계를 주장하여, 적어도 청소년의 보호 업무에

관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규율하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정책이 통합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기본법은 제9조에서 ‘여가권 및 예술·창작의 자유’를 〈표 IV-2〉와 같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같은 표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규제 조문들을 두고 있다. 물론 이것이 원론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과 상충될 여지가 없겠으나 실제 법 운용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과도하게 청소년의 ‘여가권 및 예술·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본다.

〈표 IV-2〉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이 현실적으로 상충하게 되는 사례

주 제	청 소 년 기 본 법	청 소 년 보 호 법
청 소 년 의 여 가 향 유 및 문 화 · 예 술 활 동 참 여 권	(제9조)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지 며, 건전하고 다양한 문 화 · 예술 활동 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 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 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 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 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 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 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생략). 가.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2)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 비디오 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종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의한 무도학원업, 무 도장업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 · 제한구역의 지정등) ①지방자 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 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 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이하 조항 생략).

2. 개정 청소년헌장의 인권항목의 구체적 법제화

가. 헌장의 일반적 성격과 법제화의 의미

헌장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모임의 기본적인 이념이나 목적, 혹은 원칙을 정리한 활동 준칙을 의미한다. 국제법에서는 이것을 charter라고 하는 말로써 표현한다. 이 말은 가끔 조약의 일종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⁴⁷⁾

헌장은 선언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혹은 정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헌장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까닭은 바로 헌장의 사실상 혹은 정치적 구속력 때문이다. 청소년헌장의 이념과 내용이 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헌장이 선포되면, 입법부나 행정부 등이 이것을 존중하여야 하는 사실상 의무 또는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된다.⁴⁸⁾

헌장의 법제화는 입법자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헌장의 기본 이념과 목적, 기본적인 방침을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47) 주로 국제기관의 설치 조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된다. 국제연합헌장, 국제노동기구헌장, 국제원자력기구헌장 등의 예가 있다. 동아출판사 편, 동아원색대백과사전(서울 : 동아출판사, 1988), p. 129(천정웅 의, 상계보고서, p. 275에서 재인용).

48) 천정웅은 이것을 사실상 구속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법률이 헌장의 정신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천정웅 의, 상계보고서, p. 34. 연구자는 이것을 사실상 구속력이라고 하는 말로 규정하고자 한다.

나. 개정 청소년헌장의 달라진 내용

부록에 보듯이 새로운 청소년헌장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존권적 권리 :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활동권, 학습권, 근로권,

② 사회적·문화적·시민적 권리 : 의사표현권, 문화예술 활동 창조권, 참여권 및 정보에 접근할 권리, 문화향수권, 여가권

③ 청소년의 책임 :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 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 가정에서의 책임, 소외 받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관리 책임,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자연과 환경에 대한 애착심,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청소년을 위한 사회의 역할.

다. 청소년헌장의 구체적 법제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이 명실공히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위에서 본 대로 개정 청소년헌장에 내포되어 있는 이념과 청소년의 인권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청소년헌장의 구체화에서는 특히 청소년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라는 이유로 유보·제한되었던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 및 적용가능한 시민권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사

회발전에 참여하고 이바지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과하고자 한다.

3. 청소년육성 정책 추진 과제의 반영

청소년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건전하고 책임의식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자율적인 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 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국제화·정보화 시대에서의 청소년의 주도 능력 배양,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 청소년 육성에 대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등을 청소년정책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데 청소년기본법이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청소년기본법의 구체적 개정 방안

1.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과의 관계 설정 방안

청소년기본법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청소년기본법을 다른 청소년관계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자리 매김을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연구자가 접한 것으로서 두 가지 방안을 소개한다. 한 가지 방안은 청소년기본법은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압축하여 추상적으로 담도록 하고, 청소년개발 및 육성과 보호,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각기 분리·제정하여 4법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한 가지는 청소년에 관한 웬만한 사항은 기본법에 담도록 하고, 청소년진흥 및 개발에 관한 법과 그 보호에 관한 법률만 따로 두어서 3법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양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연구자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다.

가. 제1안

- (1)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 법률을 4법 체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에는 총칙과 기본시책, 정책 추진 기구만을 둔다.

둘째,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참여증진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한다. 이것을 「(가칭)청소년권리신장및참여증진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셋째,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내용은 별도의 「(가칭)청소년개발·진흥법」으로 이관한다.

넷째, 현행의 「청소년보호법」은 그대로 존치하되,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개정한다.

헌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세 개의 다른 청소년관계법률(안)의 상호간의 체계를 도표화하면 다음 <표 IV- 3> 과 같다.

<표 IV-3> 헌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다른 청소년관계법 상호간의 체계(1)

헌법	←	청소년 기본법	←	「(가칭)청소년권리신장및참여증진에관한법률」
				「(가칭)청소년개발·진흥법」
				「(가칭)청소년보호법」

(2) 현행의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한다.

(3) 개정할 청소년기본법안에서는 그 내용을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시책, 제3장 청소년정책 추진기구 등으로 편제한다.

나. 제2안

(1)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의 정신을 기초로 청소년기본법을 편하되, 기존의 청소년기본법보다 基本法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한다. 다른 청소년관계법률들에 대하여 명실공히 청소년기본법이 상위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한다.

(2) 다른 청소년관계 법률들은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첫째,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의 개발과 청소년단체의 진흥 등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가칭)청소년개발·진흥법」으로 이관한다.

둘째, 현행의 청소년보호법은 그대로 존치하되,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개정한다.

헌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두 개의 청소년관계법의 상호간의 체계를 도표화하면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헌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다른 청소년관계법 상호간의 체계(2)

헌법	←	청소년기본법	←	「(가칭)청소년개발·진흥법」
				「(가칭)청소년보호법」

(3) 청소년기본법에는 정당한 청소년법관계에 필요한 원칙적인 규정만을 담기로 한다.

(4) 개정 청소년기본법안의 내용 편제는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가정과 사회, 국가 등의 의무, 제4장 청소년 기본정책 제5장 청소년정책의 총괄, 제6장 벌칙, 부칙 등으로 편제한다.

다. 제1안과 제2안의 비교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안)의 체계에 대한 두 가지 안을 비교하면 다음 〈표 IV- 5〉와 같다.

〈표 IV- 5〉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안)의 체계 비교

개정방안	청소년관계 법단체				
제1안	헌법 ←	청소년기본법 ←			「(가칭)청소년권리신장및참여증진에관한법률(안)」
					「(가칭)청소년개발·진흥법(안)」
					「청소년보호법」
제2안	헌법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보호법」
					「(가칭)청소년개발·진흥법

양자의 차이점은 제2안은 제1안과 달리 청소년권리신장 및 참여증진법안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 2안은 그 내용을 청소년기본법의 한 장으로 편제한다.

연구자는 청소년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제 위상을 확보하도록 하려고 하면 예컨대, 「(가칭)청소년권리신장및참여증진에 관한법률」과 같은 것을 따로 만들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디까

지나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한 기본법이어야 하므로 기본법 속에 하나의 장을 두어서 청소년의 권리와 정책 참여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제2안을 중심으로 청소년기본법 개편방안을 입안하기로 한다.

2. 청소년기본법의 골격 개편 방안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과의 관계를 제2안과 같이 설정하는 경우 결국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골격은 다음 <표 IV- 6>과 같이 개편될 것이다.

<표 IV- 6> 청소년기본법의 골격 개편 개요

구분	현행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비고
청 소 년 기 본 법 의 골 격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현행 총칙의 세분화
		제2장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가정과 사회, 국가의 의무	
		제4장 청소년기본정책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제5장 청소년정책의 총괄	수정·보완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등	삭제	신설 청소년개발·진흥법으로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삭제	"
	제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등	삭제	"
	제6장 청소년복지등	삭제	"
	제7장 한국청소년상담원등	삭제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삭제	"
	제9장 보칙		해체
	제10장 벌칙	제6장 벌칙	존치

청소년기본법의 골격을 개편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청소년기본법상의 총칙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의 권리를 청소년헌장을 참고하여 구체화하고, 가정과 사회 및 국가의 책임에 관한 조항들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시키며, 청소년 정책에 관한 원칙 규정들을 묶어서 역시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킨다.

둘째, 청소년기본법이 명실공히 청소년관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육성만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에 관해서도 이 법에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육성 및 보호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행정기관을 통합하여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넷째, 청소년 수련 활동 및 복지와 육성기금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가칭 청소년개발·진흥법을 만들어 분리시킨다. 이 사항들은 하나의 조성행정의 대상이 되는 것들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법에 이것들을 넣기에는 부적합하다.

다섯째, 현행의 청소년기본법에서 보칙은 이를 해체시켜 조문마다 해당되는 장에 이관한다.

3. 개정 청소년기본법의 장별 조문 내용 구성 방안

가. 제1장 총칙

아래에서 보듯이 현행의 내용 편제와 동일하게 하나, 목적과 이념에 정부의 청소년정책과 비전을 반영한다. 특히 이 법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함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점을 밝힌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과 기본정책)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과의 관계)

나. 제2장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현행 청소년기본법상의 권리관계 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칙 제5조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만을 형식적으로 선언한 데에 그침으로써 법률상 권리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청소년은 자신의 능력 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하는 경우 1998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청소년권리헌장이 청소년의 권리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그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청소년헌장 중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항목만 발췌하면 다음

과 같다.

〈청소년현장 중 청소년의 권리 부분〉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헌장은 그 선언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권리 및 책임으로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 방법인데, 헌장 자체가 이미 구체적인 권리 및 책임의 형태로 선언된 결과 이것을 그대로 조문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나 성격이나 내용이 비슷한 권리항목끼리 통합하여 조문화하는 것이 조문의 수를 줄이고, 내용을 체계화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 후자의 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청소년헌장을 조문화하여 보았다.

제5조(균형 성장할 권리)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언론과 집회활동의 자유 및 권리)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진리탐구 및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

지며,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여가권 및 예술·창작의 자유)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사생활 보호와 정보접근권)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정책 참여권)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청소년의 타인 존중의 의무등)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의무를 진다.

제14조(청소년의 평화공존 및 환경보호 의무)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히며,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갈 의무를 진다.

제15조(남녀평등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하며,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을 진다.

제16조(비폭력의 의무)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 제3장 가정과 사회, 국가 등의 의무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가정과 사회, 국가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문들은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⁴⁹⁾

제3장 가정과 사회, 국가 등의 의무

제17조 가정의 의무

제18조 사회의 의무 ※가정과 사회의 책임을 통합해서 규정할 수도 있다.

제19조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의무

제20조 청소년의 달

라. 제4장 청소년 기본정책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9조(청소년교육의 진흥등)을 포함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법 원칙들을 이 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청소년 기본정책

제21조(청소년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제22조(청소년의 국제교류 진흥)

제23조(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제24조(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

49)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현장 해설, pp. 15-17 참조.

제25조(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제26조(청소년의 보호)

제27조(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마. 제5장 청소년정책의 총괄

현재 청소년 육성과 보호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기구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것을 통합하여 청소년기본법에 규정하도록 한다.

제5장 청소년 정책의 총괄

제28조(청소년육성·보호정책의 총괄)

제29조(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제30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설치)

제31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기능)

제32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33조(지방청소년관계위원회)

제34조(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제3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

제37조(청소년육성위원회등)

제38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제39조(청소년인권교육센터의 설치)

제40조(지역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제41조(청소년전문대학원 설치운영)

제42조(청소년 관련 부처간의 협조 의무)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4조(감독)

바. 현행 제6장 보칙

보칙은 해체하여 해당되는 곳에 각 조문을 분산시킨다.

사. 제6장 벌칙

현행 청소년기본법상의 벌칙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그대로 존치한다.

제6장 벌칙

제45조(포상)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4. 청소년기본법 개정시안의 조문 작성 과정에서의 검토사항

가.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⁵⁰⁾

☐ 개정 취지

청소년기본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 중 미비한 점을 수정한다.

☐ 개정 방안

가. 제1안 : 이 법은 헌법에서 보장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복지향상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향상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안 :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의무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의무를 정하고, 청소년 육성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0) 법의 목적 조항에 관해서는 박영도, 입법이론 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1), p. 193 참조.

현행법의 내용	수정안의 검토		
	제1안	제2안	참고 자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u>헌법에서 보장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복지향상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향상과 발전을 도모할</u>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청소년의 권리 및 의무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u>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 <u>제도와 그 운영에</u>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률의 목적 조항 참조. 법률의 목적 조항에 관한 일반적 입법론 고려.

현행법은 기존의 청소년육성법이 제2안과 같이 하였던 것을 입법원칙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현행법의 입법태도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청소년의 권리에 대응하는 것은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의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국가 등의 책임에 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한 부분도 이렇게만 해서는 문제가 된다. 첫째는 이 법의 사항적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다. 청소년 육성만이 아니라 보호에 관해서도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는 정책이 바뀔 경우 법 자체도 바뀌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육성과 보호에 관한 제도 및 그 운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2조(기본이념 및 기본정책)

□ 개정 취지

개정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은 구청소년헌장이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만 봄으로써, 현재의 청소년의 권익 보장을 소홀히 다룬 것을 반성하여 청소년의 ‘오늘의 삶’의 중요성 강조하고, 현재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미래의 주역으로서의 시민적 자질을 갖추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이념조항에서 바로 이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개정 방안

청소년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법은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시민인 동시에 현재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가정과 학교사회, 국가를 통한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1990년의 구 ‘청소년헌장’이 청소년을 “세 시대의 주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8년 10월 25일 개정·선포된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것은 과거 정부가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친 데에 반하여 현 정부는 소년을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인들과 동일한 권익 증진의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을 청소년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

로 보아 청소년문제에 대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을 정책 입안시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한 것에서 출발한다. 개정 법안은 이것을 반영하고자 한다.

현행법의 내용	개정방안	
	개정안의 내용	참고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2조(기본이념 및 기본정책)①이 법은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시민인 동시에 현재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가정과 학교사회, 국가를 통한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 육성·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자율성·창의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개정 청소년헌장

(3) 제3조 정의

□ 개정 취지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수정한다.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한다. 국민의 정부가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주요 과제를 설정한 것을 반영하여 청소년 육성의 개념에 청소년의 청소년 정책 參與의 의미를 포함시킨다. 아울러 청소년보호에 관해서도 정의 규정을 둔다. 다른 정의규정들, 특히 수련활동 등에 관한 정의 규정들을 그대로 둘 것인지는 좀더 검토하여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개정방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참여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의 내용	개정방안	
	개정방안의 내용	참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 수련활동”(생략) 4. “청소년 수련 거리”(생략) 5. “청소년수련시설”(생략) 6. “청소년 수련지구”(생략) 7. “청소년지도자”(생략) 8. “청소년단체”(생략)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참여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 <u>청소년보호</u> ”라 함은 <u>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 4. “청소년 수련활동”(생략) 5. “청소년 수련 거리”(생략) 6. “ <u>청소년수련시설</u> ”(생략) 7. “ <u>청소년 수련지구</u> ”(생략) 8. “ <u>청소년지도자</u> ”(생략) 9. “ <u>청소년단체</u> ”(생략)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 청소년헌장

(4) 제4조 다른 법과의 관계

□ 개정취지

청소년육성법과 달리 청소년기본법은 동법이 다른 법률에 대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모든 사항에 걸쳐서 우선 적용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동법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상위법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그 우선적 효력을 청소년 육성에 국한한 점이며, 둘째는 이 법과 상충하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조항의 효력이 개폐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효력 여부에 대해서 학설상의 다툼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을 개진한다.

□ 개정방안

제4조(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과 상충되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현행법의 내용	개정방안	
	개정방안의 내용	참고
제4조(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과 상충되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나. 제2장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개정 취지

현행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것이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또한 보장되는 권리의 범위가 한정되어 청소년법관계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청소년으로서 침해당하는 그 밖의 많은 권리들을 구제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에 제정되고 1998년에 개정된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은 청소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달리 하여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자기 삶의 주체로서 인식하여, 그들이 현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다(〈표Ⅳ-7〉 참조). 따라서 이 법에서는 이러한 청소년헌장의 개정 취지를 살려 이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표 IV- 7〉 신·구 청소년헌장 내용 비교

내용	구청소년헌장 (1990)	신청소년헌장(1998)	비고
전문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 이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 은 인격체로서 존증받을 권리와 시민 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 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 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 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 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 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 경을 조성한다.	

내용	구 청소년헌장 (1990)	신 청소년헌장(1998)	비고
청 소 년 의 권리	청소년은 출생, 성별, 학력, 직업 그리고 신체적 조건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청소년은 생존권과 신체적 균형 성장권,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모임을 만들고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 소 년 의 책임	해당 규정 없음	청소년은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지며,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 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청소년은 남녀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가며,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내용	구청소년헌장 (1990)	신청소년헌장(1998)	비고
가정, 학교, 사회, 국가의 책임	본문 4개 조문에 걸쳐서 규정함	본문에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전문의 끝에서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개정 방안

청소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에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이것을 다른 법에 위임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청소년권리 헌장을 구체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5조(균형 성장할 권리)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언론과 집회활동의 자유 및 권리)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로운 의사

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진리탐구 및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지며,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여가권 및 예술·창작의 자유)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사생활보호와 정보접근권)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청소년의 타인 존중의 의무등)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의무를 진다.

제14조(청소년의 평화공존 및 환경보호 의무)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히며,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갈 의무를 진다.

제15조(남녀평등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하며,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갈 책임을 진다.

제16조(비폭력의 의무)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내용 편제상의 차이점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총칙 규정 중에 제5조에 하나의 조문만을 두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의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판단 하에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기로 한다. 다만 따로 두는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이것을 청소년기본법에 별도의 장을 두어 규정하는 방안과 아주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그곳에 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은 그 성격상으로는 입법체계상으로 볼 때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는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에 별도의 장을 두어 여기에 규정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현행법의 내용	개정방안	참고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 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견을 추구 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 적·신체적 건강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 개발과 건전 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 고 가정·사 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의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균형 성장할 권리)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 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권리) 청소년은 물 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 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언론과 집회활동의 자유 및 권리) 청소년은 자신 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지며, 자 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 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진리탐구 및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청소 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지며,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여가권 및 예술·창작의 자유)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 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사생활보호와 정보접근권) 청소년은 사적인 삶 의 영역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청소년의 타인 존중의 의무등) 청소년은 가정· 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의무 를 진다. 제14조(청소년의 평화공존 및 환경보호 의무)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히며,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 명과 더불어 살아갈 의무를 진다. 제15조(남녀평등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청소년 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 천하며,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 족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을 진다. 제16조(비폭력의 의무)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 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헌법 제10 조 이하의 기본권 및 기본 의무 조항 ※ 개정 청소 년 헌장

(3) 제3장 가정과 사회, 국가 등의 의무

□ 개정 취지

가정과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의무가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상의 규정과 크게 달라질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권리 객체로 대하던 것을 탈피하여 권리주체로 인식하기로 하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그 내용이 전적으로 같을 수도 없다고 하겠다. 요컨대, 본 조항들의 개정 취지는 개정 청소년헌장에 포함된 가정과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새로운 의무가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의미를 갖도록 하는 데에 있다.

□ 개정방안

가. 제1안

지금까지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되었던 가정의 책임 및 사회의 책임을 하나로 묶는다. 대신에 그 내용을 간략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종전에도 묶인 채로 규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둔다.

제17조(가정 및 사회의 의무)

제1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나. 제2안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이 가정 및 사회의 책임을 따로 규정한

것을 그대로 둔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해서는 현재 한 조문으로 규정된 것을 분리하여 따로 규정한다. 내용도 개정된 청소년헌장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제17조(가정의 의무)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의 의무) 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방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허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제20조(청소년의 달)

가정의 책임 및 사회의 의무를 하나로 묶고, 대신에 그 내용을 간략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1안은 가정과 사회의 의무로 규정된 내용이 공허하여 아무런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게 할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이 가정 및 사회의 책임을 따로 규정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종전에도 묶인 채로 규정된 것을 분리하여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 현행 청소년기본법과의 내용 편제상의 차이점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가정과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책임에 관해서 제1장 총칙의 장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총칙에 규정하기보다는 별도의 장을 두어 규정하는 것이 그 내용의 성격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도의 장을 두기로 하며, 이 점에서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상의 내용 편제와 차이가 나게 된다.

현행법의 내용	개정방안		
	제1안	제2안	참고
제15조(가정의 책임)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정 및 사회의 의무)①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정의 의무) ①가정은 청소년이 현재 자기 삶 의 주인으로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며, 폭행 등 청소년에게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도와야 한다.	청소년문제 관련 신문기사 및 청소년 문제 관련 보고서, 연구서
제16조(사회의 책임)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현행법의 내용	개정방안		
	제1안	제2안	참고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방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허가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허가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제18조(사회적 의무)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방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근로관계에서의 착취나 유괴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1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제20조(청소년의 달)	

(4) 제4장 靑少年 基本정책

□ 개정 취지

기존의 靑少年기본법상의 “靑少年육성정책의 총괄” 조문들은 주로 靑少年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에 관한 조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규정 가운데 靑少年기본정책에 관한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리하여 다음 장의 “靑少年정책의 총괄”의 장에 규정하기로 한다.

□ 개정방안

(1) 본 장에서는 靑少年의 기본정책으로서 靑少年기본법에 담아야 할 것들을 규정한다.

(2) 靑少年기본법에 법제화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1조(靑少年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제22조(靑少年의 국제교류 진흥)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靑少年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 靑少年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靑少年의 국제교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남·북靑少年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 靑少年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제24조(靑少年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①국가는 靑少年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생활태도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靑少年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25조(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제26조(청소년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비행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3)현행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조문들은 가칭 청소년개발·진흥법(안)에 이관한다.

청소년기본법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중 제64조(기금의 조성)

제65조(기금의 관리)

제66조(기금의 용도)

제66조의2(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 기존 청소년기본법과의 내용 편제상의 차이점

청소년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기본법이 취하고 있는 입법태도는 제1장을 “총칙”으로 하고, 제2장에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이라 하여 제10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제11조(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제12조(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제13조(지방청소년위원회),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16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7조(청소년의 달)을 규정하고, 제6장에 청소년복지등이라 하여 제46조(청소년복지증진등), 제47조(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8조(청소년 유해환경 정비등), 제49조(청소년의 비행예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장에 “청소년육성기금”이라 하여 제63조(기금의 설치), 제64조(기금의 조성), 제6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6조(기금의 용도), 제66조의2(지방청소년기금의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제9장 “보칙”의 규정 중에도 청소년정책 육성과 관련된 조항들이 보인다. 제67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제68조(조세감면등), 제69조의2(교육), 제70조(포상)등도 광의의 청소년육성정책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처음의 접근 구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그것의 수립 및 추진 체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사항들은 ‘청소년개발및진흥법’을 별도로 두어 거기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육성과 보호등,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사항만을 규정한다.

현행법의 내용	개정방안	참고
제9조(청소년교류의 진흥등) 제10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제11조(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 체계) 제12조(청소년육성위원회등) 제13조(지방청소년위원회)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16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7조(청소년의 달)	제21조(청소년증심의 수련활동 체계 구축) 제22조(청소년의 국제교류 진 흥)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 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 청소년기구와 정보교환을 활 성화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 교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 다.	청 소 년 현장과 청 소 년 육성 5 개년 계 획

현행법의 내용	개정방안	참고
제46조(청소년 복지증진등)①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생활태도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남·북청소년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제24조(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①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생활태도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7조(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8조(청소년 유해환경 정비등)		
제49조(청소년의 비행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비행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제26조(청소년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비행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3조(기금의 설치)		
제64조(기금의 조성)		
제6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6조(기금의 용도)		
제66조의2(지방청소년기금의 조성)		
제67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제68조(조세감면등)		
제69조의2(교육)		
제70조(포상)	제27조(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5) 제5장 청소년 정책의 총괄

□ 개정 취지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중앙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당국자에 의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청소년 육성 정책은 문화부에서, 청소년보호정책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각각 분리 입안·시행되어 왔다. 이번 기회에 책임 있는 당국자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업무가 장악되어야 한다.

□ 개정방안

가. 제1안

청소년정책담당부서(문화관광부장관, 위원회, 청 등)에 관한 근거조항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조직 사항만을 기본법에 규정한다.

나. 제2안

(1) 청소년 육성·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조직 사항들은 「(가칭)청소년개발·진흥법(안)」을 별도로 두어 거기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2)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7장에서의 한국청소년개발원에 관한 제50조 내지 제60조의 2, 제7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도 청소년개발·진흥법(안)에 이관한다.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 기존 청소년기본법상의 내용 편제상의 차이점

현행 청소년기본법상으로는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기관들에 관한 조문들이 산재해있었으나 법의 개편을 통하여 같은 것은 같은 곳에 통합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이들 규정들에 구체화되어있는 여러 행정기관들이 실제로 모두 필요한 조직들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조직만 방만하고 실제로 하는 일에서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 문제는 별도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행법의 내용	개정방안		
	제1안	제2안	참고
제10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청소년정책담당부서(문화관광부장관, 위원회, 청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기본법에 규정한다.	제28조(청소년육성·보호정책의 총괄)	
제26조(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제29조(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제27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설치)		제30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설치)	
제28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기능)		제31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기능)	
제29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32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30조(지방청소년관계위원회)		제33조(지방청소년관계위원회)	
제31조(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제34조(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제32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3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33조(계획수립의 협조)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2조(청소년육성위원회등)		제37조(청소년육성위원회등)	
제13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제38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제35조(청소년인권교육센터의 설치)		제39조(청소년인권교육센터의 설치)	
제36조(지역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제40조(지역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제37조(청소년전문대학원 설치운영)		제41조(청소년전문대학원 설치운영)	
제38조(청소년 관련 부처간의 협조 의무)		제42조(청소년 관련 부처간의 협조 의무)	
제69조(감독)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4조(감독)	

(6) 제6장 벌칙

☐ 개정 취지

현행법을 그대로 존치시킨다.

☐ 개정안

제45조(포상)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현행법의 내용	개정방안	
	개정방안의 내용	참 고
제70조(포상) 제74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제76조(과태료)	제45조(포상)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형사법 등

제5장 結 論

1. 연구결과 요약
2. 제시된 시안의 입법가능성과
한계
3. 연구제한점

제5장 結論

1. 연구결과 요약

청소년기본법은 그것이 기본법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단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그 외에 청소년보호 등 규제 관계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그 적용을 일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들은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법 원칙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기왕에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을 전신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진 것인 만큼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 법에서 어떤 통일적인 원칙을 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연구자는 기왕에 관계 법률에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상, 정부가 청소년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의 장점을 살려 가는 쪽으로 관계 법제를 운용하고 정비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에서 연구자는 차제에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독자들이 본 연구의 성과가 도대체 무엇이나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연구자로서 여기에 자신 있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

지 조심스럽기만 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청소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하는 질문에 어느 정도 답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하겠다.

생각전대, 청소년기본법은 그 자체로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첫째, 그 조문의 수가 기본법으로서는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둘째, 그 주된 내용이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법적인 것들로서, 특히 청소년 육성 위주의 일면만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입법체계의 면에서 아직도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관계법 자체의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이 법이 변화된 청소년환경에 대처하며, 정부의 청소년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의 목적 조항에서부터 별칙 조항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정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법에 규정된 청소년법관계에서의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와 청소년 관계 법령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론하고, 그 미비점을 검토하는 등의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론에 근거하여 향후 이 법을 정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입법론을 개진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은 그 연혁을 보면 1990년 5월에 제정되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실질적인 모태가 된 것은 1985년 1월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은 이 육성법 이전까지는 중심을 그 보호에 두었으나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그 육성에까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관 부서는 교육부에서 체육부로, 다시 체육청소년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전전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으며, 현금에 이르러서도 청소년보호업무 주관 부서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서로 권한 다툼을 벌이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형편이 이러한 만큼 청소년기본법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말인즉 기본법이라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육성법에 머무르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은 시정되는 것이 옳으며, 그것이 옳다고 하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그 방향은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은 하나의 기본법 하에서 동일한 원칙의 적용을 받는 방향으로 정립됨으로써 비로소 상호보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청소년기본법에 무엇이 우선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인권항목들이 차제에 이 법에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항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점을 찾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검토한 자료에 헌법상의 청소년 관련 인권 항목들과 교육관계법상의 청소년 혹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항목들 및 국

제청소년인권조약과 그동안의 헌법학제에서의 성과물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자료원으로 활용된 것이 1990년 제정되고, 1998년에 개정된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에서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문들이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여 도출한 인권 항목들이 모두 11개 항목에 이른다. 이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균형성장 및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사생활 보호, 언론과 집회활동의 자유 및 권리, 진리탐구 및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여가권 및 예술·창작의 자유, 정부접근권 및 청소년 정책 참여권 등이다. 물론 청소년에게 이러한 권리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에 합당한 의무도 추가되었다. 예컨대, 청소년의 타인 존중의 의무등과 청소년의 평화공존 및 환경보호 의무, 남녀평등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 비폭력의 의무등이 그것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권항목들을 청소년기본법에 새로 규정하기로 하면서, 차제에 이 법을 청소년관계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및 중요한 청소년정책, 정책집행에서의 기본적인 원칙들과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기존에 이 법에 규정하였던 다른 사항들 예컨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많은 규정들과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들은 이를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입법 정책적인 성격의 법을 제정하는 한편, 이 법이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도 명실상부한 기본법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보호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청소년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들과 행정기관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기본법에 규정하기로 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판단에서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에서 핵심

이 되는 청소년관계법을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개발·진흥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3법 체제로 재편할 것을 제안하여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3법 체제를 전제로 하여,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골격 편제에서는 이를 모두 6장으로 하되,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가정과 사회, 국가 등의 의무, 제4장 청소년 기본정책, 제5장 청소년 정책의 총괄, 제6장 벌칙으로 편제하고 조문의 수를 48개 조문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현행의 청소년기본법이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등,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제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등, 제6장 청소년복지등, 제7장 한국청소년상담원등,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등 모두 10장 76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제3장과 제4장, 제5장과 제6장 및 제7장을 이 법에서 분리해내고, 제9장 보칙상의 각 조문들을 다른 장에 내용이 해당되는 대로 분산시키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제1장의 총칙 중 청소년의 인권 항목에 관한 부분과 청소년 기본정책에 관한 내용은 이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키면서 내용을 확충하고자 한 것이 청소년기본법 정비 방안의 골자라 하겠다.

2. 제시된 시안의 입법가능성과 한계

연구자는 본 연구를 마치면서 본 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따져 보았다.

첫째,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만한 것은 역시 청소년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하는 조문이 입법 가능한 조문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역시 본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다른 국내법상으로도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둘째, 여기에서 제안하였듯이 하나의 현행 법률을 사실상 다시 제정하듯이 전면 개편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것 역시 선례가 없지 아니하며, 가능하다고 본다. 헌법까지도 전면 개편을 그동안 6차례나 한 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사실상 전면개편을 겪은 것이다. 다른 실정법의 예가 아깝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셋째, 과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로 이 법을 굳이 전면 개편할 필요가 하는 점이 또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청소년관계법률들의 난맥백상과 이로 인하여 청소년행정업무에 통일성과 효율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이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여야할 상황에 있다고 본다.

넷째, 과연 이 시안대로 하면 청소년관계 모든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또한 문제이다. 연구자는 이 시안대로 하면 청소년기본법이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하여, 이것과 상충되는 다른 모든 청소년관계법률들의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상호간에 겪고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구안한 시안이 현실적으로 입법화되는 경우 지금까지 청소년법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청소년의 개념 및 연령의 상이성과 그로 인한 법적용상의 혼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상호 충돌과 그로 인한 정책 집행상의 모순, 청소년의 인

권항목과 그 범주의 모호성 및 그로 인한 청소년인권 보장의 부실화, 청소년정책 담당 기관의 이원화와 그로 인한 갈등 및 합리성 결여 등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섯째, 그렇더라도 본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점을 본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안을 제시한 것일 뿐이므로, 이 안에 대한 첨삭과 수정, 보완은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연구자 스스로의 생각이 안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며, 지극히 가변적이다. 하물며 이 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본 안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에서 하나의 자료원에 불과할 것이다. 다른 많은 분들이 이 안을 발상의 자료로 삼아 보다 정치하고 세련되며, 타당한 입법론을 개진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3. 연구의 제한점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미진함을 점을 고백하고자 한다.

우선 당초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하는 일만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작성하고 청소년개발·진흥법안을 새로 만드는 등의 작업까지 함께 모두 완성하고자 하였었다. 그러나 본인의 연구 미진으로 인하여 이 일들을 매듭짓지 못한 채, 연구자 본인과 또 다른 분들의 여전한 과제로 남기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향후에 다시 시간을 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검토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를 계속하고자 다짐해본다.

다른 하나는 이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 연구 자체에 대해서도 연구가 지극히 미진하다. 우선 본고의 제2장 청소년기본법의 연혁과 법원에서는 특히 청소년기본법 자체의 개정사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이 개정사를 통하여 이 법의 문제점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장 청소년기본법 정비의 전제로서의 청소년의 인권 부분에서는 상당한 분량의 검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에서 특히 청소년의 권리를 신설하는 작업에 어떤 시사점과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단지 청소년의 인권 항목으로 이러이러한 권리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그렇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현장에 적시된 권리들을 우선 법제화해보기로 하였다는 정도의 논의에 그쳤을 뿐이다. 이것 역시 앞으로 시간을 투자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박영도(1991). 입법이론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손인수(1992). 한국근대교육사 : 1885-1945, 연세대학교출판부.

최윤진 외(1993). 청소년관계 법과 행정,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청소년관계 법과 행정(보조자료).

2. 논문 및 보고서

강지원(2000). 한국의 청소년 보호의 실태와 해결방안, 자녀안
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외, 한·일청소년보호세미나자료
집, pp. 57-64.

권형준(1998). 어린이의 기본권에 관한 고찰-특히 UN 어린이
권리조약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pp. 98-125.

권형준(1998). 헌법상 자기결정권,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금량김철수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pp. 334-354.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11.htm>.

노혜련(1997). 청소년권리조약 및 세계 정상행동 계획의 국내
이행 상황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아동
의 권리, 세계의 약속, 내일을 여는 책, pp. 100-125.

- 방은령(2000). 청소년관련법과 제도 개선안 : 보호와 육성을 중심으로, 한국법심리학회 2000년 법심리학심포지움 논문집, pp. 125-140.
-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가을호, pp. 5-29.
- 이석호(1999). 학교인권교육과정 구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교대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표시열(1991). 청소년기본권의 중요과제, 한국청소년연구, 가을호, pp. 30-49.
- 천정웅 외(1992). 청소년관계법령 및 제도 보완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1991). 학생청소년 권리의 내용과 그 제한 근거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가을호, pp. 50-69.
- 한인섭(1998). 가정 폭력 방지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서울대 법학. 39권 2호.
- 함병수 외(1991). 청소년관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
- 허종렬(1994).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헌법, 성균관법학. 제5호. pp. 35-64.
- 허종렬(1999).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pp. 131-160.
- 최윤진 · 천정웅 · 허종렬 · 이용교(1999). 청소년인권정책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3. 자료

국민일보. 1992.10.23.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기본법중 개정법률안.

정동채의원 외(1998).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청소년기본법규제사무 정비내용 요약.
(비간행자료).

여성특별위원회(1998). 여성관계법령.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기본법령집.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1998), 새로운 「청소년헌장」
을 위한 공청회.

법제처 편(1990). 각국의 청소년관계법(법제자료 제155집). 서울 : 법제처.

체육청소년부(1992). 청소년기본법 제정관련 설명자료. 서울 : 체육청소년부.

한국청소년연구원 편(1990). 청소년관계법령집 I, II.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대한민국 청소년헌장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청소년헌장 해설, 한국청소년개발원.

부 록

1. 대한민국어린이헌장
2. 대한민국청소년헌장
3. 국제청소년권리조약
4. 청소년기본법(현행)
5. 청소년기본법 개정시안(조문)
6.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
법 내용 비교

부 록

1. 대한민국어린이헌장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 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퍼 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협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

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어린이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빛나간 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2. 대한민국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 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

화를 만들어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3. 국제 청소년 권리 조약(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체결일자 및 장소 : 1989년 11월 20일 뉴욕에서 작성

발 효 일 : 1990년 09월 02일

기 탁 처 : UN

☐ 우리 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1991년 11월 20일

발 효 일 : 1991년 12월 20일 (조약 제1072호)

관보게재일 : 1991년 12월 23일

수록문헌 : 다자조약집 제10권

유보내용 :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약을 심의한 후, 이 조약의 제9조 제3항, 제21조 가항 및 제40조 제2항 나호(5)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조약을 비준한다.

개정사항 : 제43조 제2항 개정

전 문

이 조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이 조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

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에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 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조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

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

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

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인 관심이 된다.

2.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

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겨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제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

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조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조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을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조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

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착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

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약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 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

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 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 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조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조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러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조약의 발효 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조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조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 제44조 1.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조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조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조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조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조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조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조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46조 이 조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조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조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조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조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 · 중국어 ·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 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조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4. 청소년기본법(현행)

제정 1991.12.31 법률 제4477호

일부개정 19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4. 1. 7 법률제4719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76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
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 1.18 법률제5635호

일부개정 1999. 1.29 법률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 2. 8 법률제5893호(하천법)

일부개정 1999. 2. 8 법률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1999. 2. 8 법률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99.1.18>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개정 99.1.18>

1.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29>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 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 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수련시설·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기타 지역사회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가정의 책임)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

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제9조(청소년교류의 진흥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청소년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남·북청소년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제10조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93.3.6, 99.1.18>

제11조 (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① 청소년활동은 다음 각호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1. 주로 학교·직장·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근로·복무활동영역을 고유활동영역으로 한다.
2. 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

발· 정서함양· 사회봉사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영역을 수련활동영역으로 한다.

3.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영역을 임의활동영역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영역의 생활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고유활동영역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소년육성위원회등)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5.12.29>

1. 청소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중· 장기 청소년육성정책방향의 설정
3.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한다)를 둔다.

④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청소년위원회) ① 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

개정 95.12.29>

②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29>

제14조(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5.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행계획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93.3.6, 99.1.18>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등

제18조(수련거리의 개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 및 영역과 이용장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거리의 개발·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및 ③삭제 <95.12.29>

제20조(청소년지도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관련 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99.1.1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①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1.18>
[전문개정 95.12.29]

제20조의2 삭제 <99.1.18>

제21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등) ①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단체등에서 자원하여 청소년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29]

제22조(청소년지도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95.12.29>

제23조(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수익사업) ①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련활동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등을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99.1.18>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교류
3.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4. 남·북청소년의 동질성 회복 및 해외교포청소년의 지원
5.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6.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의 지원
7.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8. 기타 청소년단체의 육성등에 필요한 사업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5.12.29>

제25조의2(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95.12.29]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 시설의 설치·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수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99.1.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현황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99.1.18>

제26조의2(수련시설 허가요건)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1.18>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2.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수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수련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1.18> [본조신설 95.12.29]

제26조의3 (수련시설 운영책임자)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가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26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제20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95.12.29]

제27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등(이하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③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은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제28조(수련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등) ①수련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수련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등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전문개정 95.12.29]

제29조(시정명령) 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기준 및 안전기준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제30조(금지행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5.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수련활동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 <99.1.18>
4. 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제31조(허가취소) ①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99.1.1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때
2. 최근 2년 이내에 제7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고 동조동항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② 및 ③삭제 <99.1.18>

④ 삭제 <97.12.13>

제31조의2(청문)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본조신설 97.12.13]

제32조(수련비용등)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5.12.29, 99.1.18>

② 및 ③삭제 <99.1.18>

제33조(보험가입) 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제34조(수련시설의 승계)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수련시설의 양도·양수, 상속, 증여 또는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9.1.18>

③ 삭제 <99.1.18> [전문개정 95.12.29]

제34조의2 (수련시설의 폐지) ①삭제 <99.1.18>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

정 99.1.18>

③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수련시설 운영의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35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청소년이용시설) ①수련시설외의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련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하 "청소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등은 그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련거리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③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제37조(민간인의 참여조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기타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할 수 있다.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 서의 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6.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에 대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축목의 벌채 등의 허가, 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9.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②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

해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을 얻었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7, 95.12.29>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이용업·미용업 또는 전자유기장업중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의 신고
4. 삭제 <95.12.29>
5. 삭제 <99.1.18>

③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등록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3.3.6, 95.12.29>

④시·도지사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제39조(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의 설립)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이하 "시설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99.1.18>

②시설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시설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시설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등

제40조(수련지구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수련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수련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1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9.1.18>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구역·면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18>

④삭제 <99.1.18>

⑤수련지구의 지정절차,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면적, 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제41조(수련지구조성계획등) ①시·도지사는 제4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은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⑤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의2(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외의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8]

제42조(수용 및 사용)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수련시설의 설치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43조(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설치등) ①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의 설치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외의 자는 당해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안에서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삭제 <99.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자(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5.12.29, 99.1.18>

제44조 삭제 <99.1.18>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해제 또는 지정을 받았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99.1.18, 99.2.8 법 5893·법5911·법5914>

1.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에 대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축목의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 ②시·도지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18>

제6장 청소년복지등

제46조(청소년 복지증진등) ①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생활태도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7조(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 등에 대한 지원등) ①방송·영화·연극·간행물·음반 및 비디오물과 전화·PC통신·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를 저작·발행·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개물의 저작·보급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매개물의 저작·보급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보급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청소년유해요인 정비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대한 민간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용 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소년의 비행예방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비행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한국청소년상담원등

제50조 내지 제56조 삭제 <99.1.29>

제57조(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①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3.3.6, 95.12.29, 99.1.18>

1.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2.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3. 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5.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상담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6.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상담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99.1.29>

③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99.1.29>

제57조의2(정관) ①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상담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99.1.29]

제58조(임원) ①상담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99.1.18>

③이사장 및 이사(원장을 제외한다)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이사 및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18>

제59조 (원장) ①상담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

정 93.3.6, 99.1.18>

③원장은 상담원을 대표하며 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9조의2 (출연금 등)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9]

제59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상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9]

제60조(민법의 준용) 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9.1.29]

제61조(지방청소년상담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2조(청소년상담원의 자격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원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청소년상담원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99.1.18>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대학 등을 청소년상담원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99.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의 이수과정·검정·등급별 자격·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준용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63조(기금의 설치)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6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93.3.6, 99.1.18>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

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18, 99.1.29>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제6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수련활동의 지원
2.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청소년교류의 지원
7. 기타 청소년육성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6조의2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장학사업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9장 보칙

제67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68조(조세감면등) ①정부는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상담원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②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지원,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상담원의 운영지원,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③수련활동관련 기관이 수입하는 수련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기타 필요한 용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9조(감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단체 및 상담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8,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9조의2 삭제 <99.1.18>

제7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1조 삭제 <99.1.18>

제7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18>

1.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제73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18>

제10장 벌칙

제74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99.1.18>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조성계획

을 시행한 자

4. 삭제 <99.1.1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2. 삭제 <99.1.18>

3. 내지 5. 삭제 <95.12.29>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2.29, 99.1.18>

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2. 제26조의3의 규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행위를 한 자

5. 내지 8. 삭제 <99.1.18>

8의2.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

런시설을 폐지한 자

9. 및 10. 삭제 <99.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93.3.6, 99.1.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1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3.6, 99.1.1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5. 청소년기본법 개정시안(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의무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시민인 동시에 현재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가정과 학교사회, 국가를 통한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 육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자율성·창의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참여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 수련활동”(생략)
5. “청소년 수련 거리”(생략)
6. “청소년수련시설”(생략)
7. “청소년 수련지구”(생략)
8. “청소년지도자”(생략)
9. “청소년단체”(생략)

제4조(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 육성 ·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과 상충되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제2장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제5조(균형 성장할 권리)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언론과 집회활동의 자유 및 권리)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진리탐구 및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지며,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여가권 및 예술·창작의 자유)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사생활 보호와 정부접근권) 청소년은 사생활의 보호를 받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정책 참여권)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청소년의 타인 존중의 의무등)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의무를 진다.

제14조(청소년의 평화공존 및 환경보호 의무)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히며,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갈 의무를 진다.

제15조(남녀평등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하며,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을 진다.

제16조(비폭력의 의무)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3장 가정과 사회, 국가 등의 의무

제17조(가정의 의무)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의 의무) 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방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허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제20조(청소년의 달)-생략

제4장 청소년 기본정책

제21조(청소년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생략

제22조(청소년의 국제교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 청소년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교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남·북청소년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제24조(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①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생활태도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25조(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생략

제26조(청소년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에

방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비행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생략

제5장 청소년 정책의 총괄

제28조(청소년육성·보호정책의 총괄)-생략
제29조(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생략
제30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설치)-생략
제31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기능)-생략
제32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생략
제33조(지방청소년관계위원회)-생략
제34조(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생략
제3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생략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생략
제37조(청소년육성위원회등)-생략
제38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생략
제39조(청소년인권교육센터의 설치)-생략
제40조(지역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생략
제41조(청소년전문대학원 설치운영)-생략
제42조(청소년 관련 부처간의 협조 의무)-생략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생략
제44조(감독)-생략

제6장 감독과 벌칙

제44조(포상)-생략

제46조(벌칙)-생략

제47조(양벌규정)-생략

제48조(과태료)-생략

부 칙

6.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의 내용 비교

내용		청소년육성법 (1987.11.28, 법률 제3973호)	청소년기본법 (1991.12.31, 법률 제4477호)	비고
법의 성격		육성법	기본법	기본법은 육성법보다 포괄적이다.
총칙	목적	본래적 의미의 목적 조항 없음. 문리적으로는 목적 조항에 다음과 같이 청소년 법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음. 청소년의 지위에 대한 언급 없이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관한 규정함(법 제1조)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법 제1조)	입법론적 시각에서 볼 때 청소년기본법적 접근이 타당하다.
	기본이념	법의 이념이 위에서 본대로 '목적'이란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음(법 제1조).	청소년을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규정하고 당대에 요구되는 품성과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이념으로 설정함 (법 제2조 1항)	신설된 청소년기본법은 구 청소년육성법상의 '목적' 조항을 '이념'조항이라 하여 이름을 바꾸고 내용도 수정함. 청소년기본법의 이념은 그 후 1999년 1월 18일 수정하여,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아야 할 것임을 천명함.
	청소년육성정책의 추진방향	제시되지 않음	청소년육성 정책 추진 방향이 제시됨(법 제2조 2항).	
	적용범위 혹은 다른 법 과의 관 계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제3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적용됨(제4조)	전자는 청소년육성에 관해 서만 이 법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를 밝힌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청소년 육성뿐만 아니라 그 보호 등을 비롯한 모든 사항들에서 이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임.

내용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	비고
청소년육성 정책의 총괄	관련 규정 없음	체육청소년부장관 (법 제10조)	청 소 년 정 책 심 의 의 관 으 로 서 는 청 소 년 부 관 과 같 다. 그 러 나 은 청 소 년 육 성 기 본 법 을 중 관 하 기 위 하 여 유 청 소 년 부 장 관 들 은 별 도 로 처 리 되 는 점 에 서 는 법 과 다르다.
	관련 규정 없음	청소년활동의 영역 구분과 지원 체계(법 제11조) : 고유 활동, 수련활동, 임의활동등 3영역으로 구분함.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법 제8조 1항)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법 제12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법 제8조 2항)	지방청소년위원회 (법 제13조)	
	종합계획의 수립(법 제10조)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 10년 단위(법 제14조) 연도별 수립계획(법 제15조)	
	청소년의 달(법 제 11조)	청소년의 달(법 제17조)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의 설치· 운영 (법 제2조)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법 제26조)	청 소 년 육 성 법 은 청 소 년 시 설 이 라 한 것 이 고 문 을 두 고 있 을 뿐 이 다.
	시설운영의 위탁(법 제13조)	수련시설운영의 위탁 (법 제27조)	
	관련 조항 없음	수련시설의 시설기준등(법 제28조)	
		시정명령(법 제29조)	
		금지행위(법 제30조)	
		허가 취소등(법 제31조)	
	사용료등(법 제14조)	사용료등(법 제32조)	
	관련 조항 없음	보험가입(법 제33조)	
		수련시설의 양도· 양수 (법 제34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35조)	
		공공시설의 개방(법 제36조)	
		민간인의 참여조장 (법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8조)	
		수련시설 설치· 운영협의회의 설립(법 제39조)	

내용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	비고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등	관련 규정 없음	수련거리의 개발(법 제18조)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단체등에 관한 장을 따로 두고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육성등(법 제17조)	청소년지도자의 육성(법 제19조)	
	관련 규정 없음	청소년지도사(법 제20조)	
	관련 규정 없음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	
	관련 규정 없음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청소년지도위원(법 제9조)	청소년지도위원(법 제22조)	
	청소년단체 협조 및 지원(법 제15조)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등(법 제23조)	
	관련 규정 없음	수익사업(법 제24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법 제18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법 제25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관련 조항 없음	수련지구의 지정등(법 제40조)	청소년육성법에는 청소년수련지구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수련지구조성계획등(법 제41조)	
		수용 및 사용(법 제42조)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등(법 제43조)	
		수련지구 안에서의 금지행위(법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제45조)	

내용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	비고
청소년복지등	관련 조항 없음	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 등에 대한 지원등 (법 제47조)	청소년의 비행예방등 (법 제49조)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에 관한 육성은 물론 그 보호에 관해서도 기본법으로서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성법에 없는 조문을 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청소년유해요인정비등 (법 제48조)		
청소년연구개발기관	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설립(법 제19조)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설립(법 제50조)	청소년육성법상의 연구원조직을 보다 확대·개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 하겠다.
		임원(법 제22조)	임원(법 제51조)	
		원장(법 제23조)	원장 및 부원장(법 제53조)	
		출연금(법 제24조)	출연금(법 제54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법 제25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법 제55조)	
		민법의 준용(법 제26조)	민법의 준용(법 제56조)	
	청소년상담원	관련 규정 없음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법 제57조)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상담원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청소년육성법과 달리 개발원 외에 상담원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임원(법 제58조)	
			원장(법 제59조)	
			준용규정(법 제60조)	
			청소년상담실(법 제61조)	
			청소년상담원의 자격등(법 제62조)	

내용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	비고
청소년 육성기금	기금의 설치 (법 제27조)	기금의 설치(법 제63조)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을 보완하여 그 용 도를 한정하고 있다.
	기금의 조성 (법 제28조)	기금의 조성(법 제64조)	
	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29조)	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65조)	
	관련 조항 없음	기금의 용도(법 제66조)	
보칙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법 제31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법 제67조)	청소년육성법의 보칙을 보완하 였다.
	조세감면등 (법 제32조)	조세감면등(법 제68조)	
	감독(법 제33조)	감독(법 제69조)	
	포상(법 제34조)	포상(법 제7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3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법 제71조)	
	관련규정 없음	수수료(법 제72조)	
벌칙	관련규정 없음	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73조)	청소년기본법은 육성법과 달리 수련시설의 설 치 및 허가, 수 련지구 조성 등 에서 승인 혹은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게 감독권을 실 효성있게 행사 하기 위하여 벌 금형을 과하도록 함.
	관련규정 없음	벌칙	
	관련규정 없음	양벌규정	
벌칙	과태료(법 제36조)	과태료	

